

2022년 국외연수 결과보고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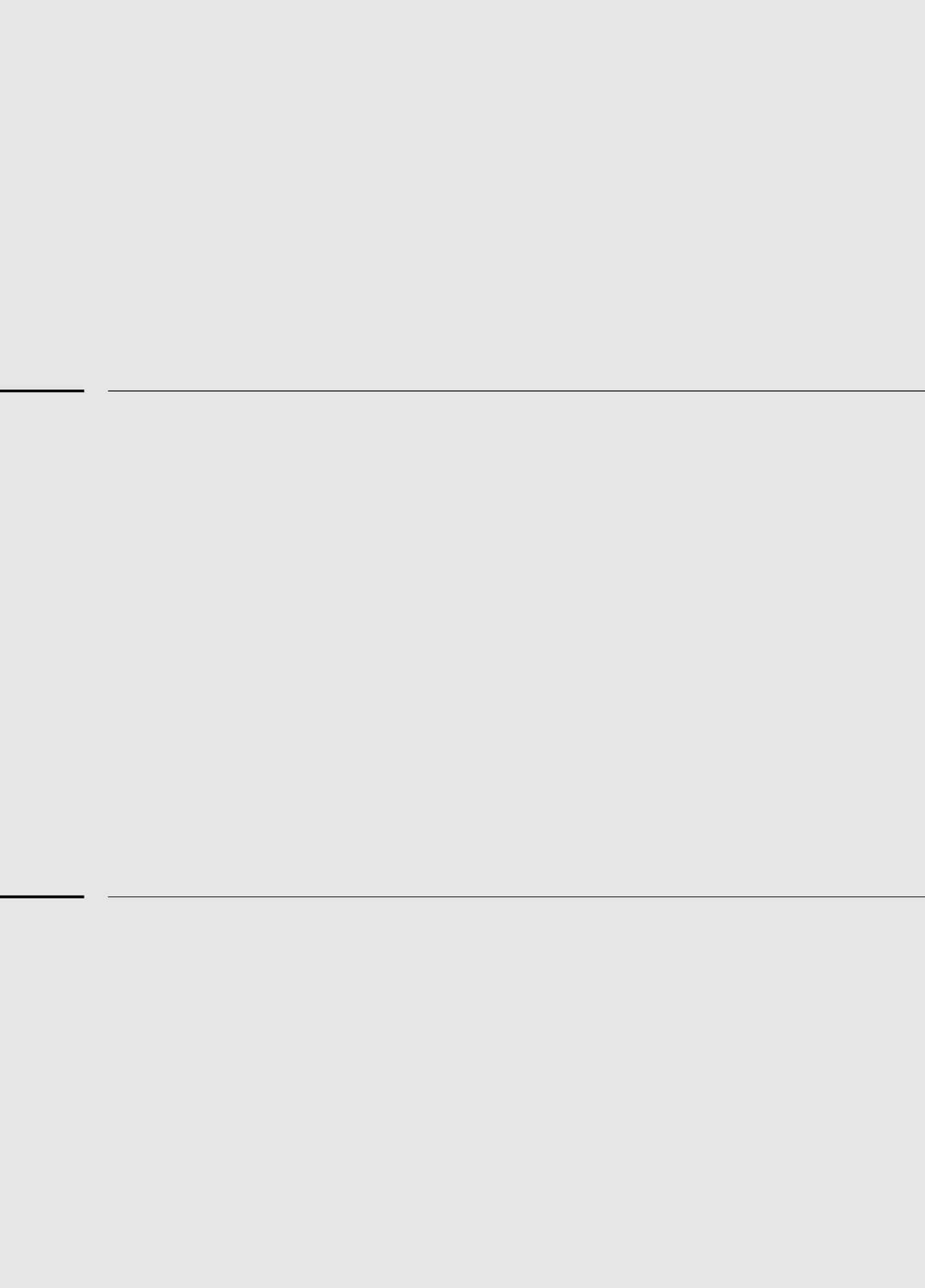
- **[발표 1]**
영국의 개인예산제도(Personal budgets)개요 및 한국에의 시사점 1
(강동욱 교수 / 한국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발표 2]**
Disability Rights 기관 소개 및 시사점 13
(기영남 국장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시설국)

- **[발표 3]**
영국의 개인예산제도와 IN-CONTROL 28
(정성희 주임 / 한국장애인재단 연구기획팀)

- **[발표 4]**
Kingston Centre for independent Living 44
(문영임 팀장 / 한국장애인재단 연구기획팀)

- **[발표 5]**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실행전략 51
(이승기 교수 /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영국의 개인예산제도(Personal budgets) 개요 및 한국에의 시사점

발표 1. 강동욱 (한국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영국의 개인예산제도(Personal budgets) 개요 및 한국에의 시사점

강동욱 / 한국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들어가며

영국은 현재 공공재정으로 지원하는 돌봄서비스(social care) 영역에서 개인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개인예산제도는 서비스 현금지급제도의 역사 위에 만들어졌으며 서비스 전달과정 전반을 서비스 이용자 중심으로 바꾼 제도이다(이동석·김용득, 2013). 현재의 현금지급제도는 개인예산제도의 마지막 전달과정 중 하나의 선택사항이다.

영국의 개인예산제도의 역사적 흐름은 1990년 커뮤니티케어법(Community Care Act) 개혁에서 시작되었다. 커뮤니티케어법은 지방정부가 서비스 신청을 받아 이용자를 결정하고,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는 서비스 시장화를 통해 욕구에 근거한 서비스 설계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전달체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영국 내 장애인단체들은 시장화 개혁이 진정한 장애인 선택권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이용자 참여를 강화와 서비스 전달 과정을 개혁하는 개별적 유연화(personalisation) 철학이 제시되었다. 이에 그 설득력이 인정되어 1996년 직접지불법(Direct Payment Act)과 1997년부터 직접지불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돌봄 및 지원 영역에서의 가시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수급 과정 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제도 이용자가 사실상 신체장애인과 일부 노인을 위한 제도로 국한되었다. 이에 2000년대 중반부터 발달장애인 지원단체인 In Control 연합이 조성되어 발달장애인 욕구에 기반하여 서비스를 설계하고 이들의 선택과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중개조력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별예산제도(individual budget)의 도입을 검토 및 시범사업을 실시하

였다. 그러나 개별예산이 사회서비스 분야의 여타 지원기금을 포괄하도록 다른 부서와 자금을 합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사업이 혼재되어 통합이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되면서 개별예산제도가 개인예산제도로 전환되었다(이한나 외, 2019). 현재의 개인예산제도는 2008년 잉글랜드에서 제도화되며 정립되기 시작했으며, 2014년 돌봄법(Care Act 2014) 제정을 통해 성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법적 틀 제공 및 서비스 정비를 통해 재정 부분을 개편하였다. 이와 함께 2015년 돌봄 및 지원에 대한 법적 지침(care and support statutory guidance)이 개발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제도로써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다.

개인예산제도는 장애인 이용자가 직접 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정하여, 기존 탑다운(top-down)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도입되었다. 장애인 이용자가 현금을 통해 서비스를 결정 및 관리하게 되는 점에서 개인예산이라 명명되었으며, 이 점이 개인예산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즉, 개인예산제도의 취지는 유연성, 선택, 자기 통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2. 영국의 개인예산제도(personal budgets)

1) personalisation과 personal budgets의 관계

영국에서 personalisation은 social care service를 개인의 서로 다른 욕구에 적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세부화 시키는 정책 또는 흐름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personalisation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대표적인 것이 direct payments(DPs)와 personal budgets(PBs)이다. personalisation이 정책의 목표 또는 지향을 표현하는 용어라면 DPs와 PBs은 구체적인 수단으로 채택되어 있는 제도인 것이다.

영국에서 DPs와 PBs는 이용자의 선택과 자기결정을 지원하는 자기주도적지원의 실현방법이다. DPs와 PBs의 관계는 두 가지 다른 차원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보면 DPs는 PBs가 시행되기 전에 먼저 시행된 제도이다. DPs 근거법률은 1996년 제정되었고, 1997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DPs 제도는 기대만큼 확산되지 않았고, 신체장애인 등의 일부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등과 같이 의사결정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PBs를 새로이 개발하여 시행하였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PBs는 DPs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다가 PBs가 크게 확산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DP는 PBs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PBs를 이용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할당된 금액을 지방정부나 서비스 제공기관에 맡겨두고 사용할 수도 있고, 직접 현금을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때 지급받는 현금을 DP라 한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DP는 PBs의 일부분으로 이해된다.

2) 영국 Community Care와 DP, PBs 제도의 전개과정

(1) Community Care와 DP

영국에서는 지방정부에게 법적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각 지방 정부는 국가적으로 마련된 요구의 기준을 적용하여 각 지방정부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국가적으로 마련된 기준은 일상적인 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공급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공적 책임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중간 욕구나 낮은 욕구의 경우는 지역사회 민간 비영리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대응한다(정기혜·김용하·이지현, 2012).

지방정부의 공적 책임에 속하는 영역인 개인에게 할당되는 서비스의 경우, 그 양과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사정(평가)을 통해서 도출된다. 지방정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가 임시예산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중간급 이상의 관리자와 재정담당자가 참석하는 재정패널(funding panel)을 통해서 최종적인 수준을 조정한다(정기혜·김용하·이지현, 2012). 임시예산이 할당되면 구체적으로 서비스 계획이 수립되고, 이 계획을 통하여 서비스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될 것인가를 결정한다. 가령 어떤 사람이 식사준비와 장보기, 청소, 빨래 등에 대한 보조인 지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당 10시간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지방정부에서 공급기관과의 구매계약을 통해서 제공할 수도 있고 또는 DP나 PBs를 이용해 이용자가 직접 보조인을 모집하거나 이웃, 가족 등을 보조인으로 쓸 수도 있다. 또한 5시간은 지방정부가 계약한 서비스로 받고, 나머지 5시간은 서비스 DP나 PBs를 통해 스스로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친구나 이웃, 가족 등을 보조인으로 쓸 수도 있다(정기혜·김용하·이지현, 2012).

1990년 National Health Services and Community Care Act(NHSCCA)의 제정으로

지방정부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던 역할에서 서비스의 계획, 조정, 구매자로서의 역할로 변신하기 시작했다. 지방정부는 확보하고 있는 자원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로이 민간으로부터 구입하는 조정자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었다. 지방정부의 서비스 직접제공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처정부의 의무경쟁 입찰제도에 의해서 민간부문과 똑같이 입찰에 참가해야 했다(우국희, 2006). NHSCCA가 시행된 1993년 직후에는 여전히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더 많이 구매되었지만, 점차적으로 공적부문이 제공할 수 없는 틈새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사적 부문과의 계약이 확대되면서 민간부문의 급격한 확대가 이루어졌다(우국희, 2006).

1990년 이전에는 공공과 민간(특히, 비영리 민간)의 재정적 연결은 통상 포괄적 보조금(unspecified grant) 방식이었다(Knapp, et. al., 2001). 공식적인 계약은 거의 없었으며, 특별한 욕구를 가진 이용자를 위하여 특수한 전문가를 배치하기로 하는 정도의 계약이 일부 있었지만 매우 느슨한 형태였다. NHSCCA가 시행된 1993년부터 1996년까지를 보면 지방정부들은 외부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다소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은 한 가지 이상의 계약방식을 사용하면서 가장 적합한 방식들을 계속 모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93년에 시행된 NHSCCA는 돌봄서비스의 시장화와 민영화를 표방한 개혁이었으며, 실제로 표방한 정치적 슬로건은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을 통한 이용자 참여의 진작이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서비스가 시장화, 민영화된다고 해서 정보와 선택능력에서 취약한 이용자의 선택권이 신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 점에 대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이용자 단체에서 정부가 표방한 이용자 참여의 진작은 허구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비스를 시장화하거나 민영화한다고 선택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므로 서비스 대신 정부가 이용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요구에 따라 1996년에 Direct Payments Act가 제정되었고, 이 법에 의해서 1997년부터 18-64세의 신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대신 현금을 받을 수 있는 DPs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어서 2000년에는 노인, 16-17세 청소년, 장애 아동의 부모에게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2001년에는 모든 지방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제도가 되었다.

(2) PBs 도입배경과 내용

DPs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이 제도가 단기간에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았는데, 실제로는 전체 지역사회서비스 정부재정지출의 25% 내외에서 증가하지 않았다. 이유는 DPs를 선택하는 경우 이용자는 스스로 서비스 제공기관(인력)을 찾아야 하는 부담이 있고, 또 서비스 제공기관(인력)에 지불한 비용을 지방정부에 정산 보고하는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결국은 care worker를 이용자가 고용함에 따라 이용자는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이행해야하는 부담도 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이용자 단체는 다시 이용자 참여를 진작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시늉만 했다고 정부를 비판하였다.

DPs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정부는 PBs를 대안으로 채택하였다. 이 제도는 2003년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2005년에는 13개 지방정부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다. 2008년부터는 영국의 전체 지방정부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DPs가 확산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제거하고, 동시에 발달장애인과 같이 서비스 현금지급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도 DPs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도입되었다. PBs는 현금을 지불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서비스의 설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이용자의 자기주도성(self-direction)을 높이는 것이다. 이와 함께 PBs로 받은 현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brokerage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서비스는 지방정부에서 재정을 부담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인데, DPs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서비스 탐색과 서비스 비용지출에 대한 정산 그리고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broker가 대신해 준다. 이용자는 지방정부 또는 민간 서비스 조직에 고용되어 있거나 자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한(가족이나 친척도 가능) broker에게 서비스 이용 주문을 주면, broker가 적절한 서비스를 찾고, 이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번거로운 일을 대행한다.

DPs 제도는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의 끈질긴 운동의 결과 만들어졌으며, 개인에게 제공되던 직접 서비스와 동등하다고 여겨지는 현금을 지급하고, 수령자가 자신의 서비스 설계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PBs 제도는 DPs 제도 도입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장애인 당사자보다는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운동단체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PBs 제도의 또 다른 특징은 개인의 사정(평가)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용도로 개인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서비스 개념에서는 서비스라고 볼 수 없는 것을 포함해서, 공공, 민간, 비영리 영역의 모든 서비스에 개인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DPs 제도는 가끔 전통적이고 감수성이 떨어지는 업무 방식을 강화하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했다. DPs 제도

는 지원을 받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었지만, 개인이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식, 사정(평가)하는 방식, 사회 돌봄과 관련된 문화, 전체 사회 돌봄 예산이 사용되는 방식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PBs 제도는 DP's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PBs 제도가 그 동안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강력한 반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모형이라는 점, DP's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갖는다는 점, DP's제도와 혼동하기 쉽다는 점, 폭넓은 체계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 등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PBs 제도는 계속 확대되면서 자기주도적 지원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PBs는 서비스 이용자격을 얻은 사람들에게 자원(재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장치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이용자격을 승인받은 이용자가 자신의 상황과 욕구를 직접 기입하는 자기사정질문지(self-assessment questionnaire)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전산 시스템의 계산에 의해서 잠정적인 개인예산액이 먼저 제출되고, 이를 토대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개인예산액이 결정되면, 이 돈을 서비스 구매에 집행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이다(Glendinning, 2012). 첫째, 이용자가 현금을 수령하고 이용자의 결정과 책임 하에 PBs를 집행하는 방식이다. 둘째, PBs를 지방정부 케어매니저에게 위탁하여 지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관들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여 이용하는 방식이다. 셋째, 서비스 기관에 개인예산을 위탁하고 이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는 이용자가 결정한다. 그리고 DP's, PBs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 가운데 하나는 받은 현금의 지출범위가 계속 유연화되고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의 DP's에서는 서비스 현금지급을 택하더라도 서비스 구매는 정부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지정된 범위의 서비스에 국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DP's 제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성이 근본적으로 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정부가 지정한 서비스와 제공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이용자가 원하는 관련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person alisation 정책이라고 칭한다. 그리고 현재는 대학의 평생교육강좌 수강, 낮 활동을 위한 교통비 지출 등에도 PBs 제도를 통해서 DP's(현금)를 받아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 할당(대상)

개인예산제도는 욕구가 있는 16세 이상 성인이라면 모두가 지방정부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장애인 당사자 뿐 아니라 신청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나 의사(General Practitioner) 등 전문가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Age UK, 2020). 다만 개인예산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돌봄법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일관된 최소한의 기준인 케어 욕구 평가(care needs assessment)와 재무평가(financial assessment)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케어 욕구 평가는 신청자의 욕구와 어떤 종류의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지 평가한다.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신청자 모두에 대해 전화-온라인-대면을 이용하여 무료비용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판정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이 조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이용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 또한 욕구 평가는 신청자가 사적 관계로부터 받는 돌봄 및 지원은 배제하는데, 이는 신청자가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돌봄을 받고 있더라도 공식 재정으로 지원되는 돌봄 필요 시간을 축소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이한나, 2021). 평가 항목에는 삶의 정서적·사회적 측면, 장애인의 기술과 능력, 종교적, 문화적 배경 및 지원 네트워크에 대한 장애인의 견해, 겪을 수 있는 신체적 어려움 또는 위험, 모든 건강 또는 주택 요구 사항, 장애인의 욕구와 바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청자의 돌봄 및 지원 욕구와 신체·정신적 상태와의 관련성

신체 및 정신적 기능과 수행(신청자는 돌봄법 규칙(Care Act regulations)에 명시된 활동¹⁾ 중 2가지 이상의 활동 수행이 불가능해야 함)

수행 불가능한 활동(Inability)이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재무평가는 소득에 따른 재무평가(mean-test)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청자의 소득·저축·자산을 계산 및 평가하여 신청자에게 지급할 금액과 본인부담금을 평가한다. 저축액을 기반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광범위한 발달 및 지적장애인(Learning disability)²⁾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
- 1) 영양 관리 및 유지/개인위생/신변처리/적절한 옷차림/집 안에서의 안전/거주 가능한 집안환경 유지/가족 및 사회관계 형성 및 유지/노동, 훈련, 교육, 자원봉사 접근 및 참여/대중교통, 여가시설과 서비스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지역사회참여)/육아 등 돌봄 수행
 - 2) 영국에서의 Learning disability란 '만 18세 이전에 발병하는 상태의 장애'로, 개인의 생활 및 건강 케어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를 의미한다. 시각, 청각, 뇌성마비 등의 장애뿐만 아니라 약물남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4) 급여

(1) 급여 선택 범위와 내용(용도 및 용처)

‘개인예산’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돌봄 및 지원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을 의미한다(Age UK, 2019; 이한나 외, 2020). 개인이 필요로 하는 돌봄 및 지원 영역 범위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수립한 사용계획에 부합한 경우에는 용처에 대한 유연한 사용이 가능하다. 지방정부의 재량에 따라 세부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돌봄 외 개인지원 서비스, 이동, 장애와 관련된 장비 및 용품, 그리고 지역사회 일반서비스 이용 시 사용 가능하며, 자기주도사정에 의해 설계되지 않은 서비스 및 물품, 담배, 술 등과 같은 불법적 사용 시에는 환급해야 한다.

개인예산제도 급여 종류는 개인건강예산(Personal Health Budget), 사회적 케어를 위한 개인예산(personal budgets for social care), 교육을 위한 개인예산(personal budgets for education)으로 구분된다. 개인건강예산은 이용자의 신체·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지원 제도(Continuing care)로, 지속적인 케어를 요구하며 장기적인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영국의 의료보험 서비스인 국민보건서비스(NHS : National Health Service) 관련 병원이나 클리닉의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다. 2014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하였으며 2024년까지 서비스 이용자를 20만 명으로 확대할 것을 발표하였다. 사회적 케어를 위한 개인예산은 장애 및 건강상태로 인한 신체·감정적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간병인 고용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을 위한 개인예산은 특수교육 욕구를 가지고 있는 아동 및 청년을 대상으로 보조공학기기, 등학교 교통 지원(택시비, 주유비)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2) 급여 수준 및 책정 기준

영국의 개인예산제도는 지원 금액의 최고치와 최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용자의 욕구 기반의 지원계획을 평가하여 지방정부와 합의된 금액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지 몇 시간을 보조하는 수준부터 24시간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그 범위는 넓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저축예금 규모에 따라 일부 신청자에게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정해진다. 2022년 기준으로, £14,250(약 2,300만원) 미만의 저축예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이 없고, £23,250(약 3,700만원) 미만의 저축액을 가진 사람은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23,250 이상은 신청

2022년 국외연수 결과보고
영국의 개인예산제도(Personal budgets) 개요 및 한국에의 시사점

자 스스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HFT, 2022). 한편, 2023년 10월부터 상한선 기준은 (£23,250)에서 £100,000(약 1억6천 만 원)으로, 하한선 역시 £14,250에서 £20,000(약 3,200만원)으로 조정 예정이다(GOV. UK, 2022).

(3) 급여 지급방법

영국의 개인예산제도는 4가지 방법을 통해 이용자에게 지급되어진다. 첫째, 직접 지불방식(PBS)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 또는 지명한 사람이 보유한 별도의 은행 계좌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둘째, 시의회에서 관리하는 계정으로 확정된 개인예산을 지급한다. 셋째, 개인 서비스 펀드(Individual Service Fund, ISF)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방정부는 장애인을 대신하여 장애인 지원 서비스 기관에게 지불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돈을 사용할지에 대해 직접 결정해야 한다. 넷째, 위의 세가지 방법을 혼합하여 개인예산제를 지급할 수 있다.

5) 전달체계(제공절차 및 기관)

영국의 개인예산제도는 이용 절차는 서비스 신청 → 사정(욕구 평가 및 자격 판정) → 예산 할당 → 돌봄 및 지원계획(care and support plan) 수립 → 이용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용절차와 관련된 핵심 서비스 전달체계는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국과 서비스 제공기관(care agencies),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의 재정기관인 품질위원회(CQC : Care Quality Commission)가 있다.

지방정부는 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사정(욕구 평가 및 수급 자격을 판정), 예산 할당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한다. 잉글랜드 전역에 적용되는 일관된 최소한의 기준인 돌봄법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정한다. 이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해 옹호서비스(independent advocacy)를 마련하여 이용자가 가족이나 친구 등 대변인이 없을 경우 적절한 옹호자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Disability Rights UK, 2017). 평가는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케어매니저 등 자격을 갖춘 담당자에 의해 수행되고, 의사능력이 있는 신청자는 평가자의 도움을 받아 자기평가(supported self-assessment)를 수행하기도 한다(Disability Rights UK, 2017).

이후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잠정예산(indicative budget)을 통보하는데, 지역

에 따라 개인에게 예산을 할당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돌봄 및 지원의 필요 시간과 비용을 도출하는 조건표법(ready reckoner approach), 통계적 방법에 기반한 전산시스템에 평가 결과를 입력하여 필요 예산을 산출하는 RAS(Resource Allocation System), 계획 수립 시 사용할 잠정적 예산을 산출하는 잠정적 예산 산출(Initial indicative figure) 방식을 사용한다(이한나, 2021). 지방시의회에서는 개인예산의 평가 및 측정 방식과 금액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하며, 매년 이용자의 상황과 예산의 적절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외에 품질위원회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보건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에 대한 인증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김용득, 2013).

서비스 제공기관은 예산 할당 이후에 돌봄 및 지원계획 수립과 이용 절차에서 작용한다. 이용자는 수급자격 판정 이후 사람중심(person-centred) 원칙하에 돌봄 및 지원계획을 작성해야 하는데, 필요시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돌봄 및 지원계획 필수 포함 요소로는 이용자 욕구, 이용자 욕구의 수급자격 충족 여부 및 정도, 지방정부가 충족해야 할 욕구 및 방식, 원하는 성과와 관련된 돌봄 및 지원, 개인예산액, 문제를 경감하고 향후 욕구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지연할 수 있는 정보, 직접지불을 이용할 경우, 직접지불을 통해 충족하는 욕구와 지불 빈도와 액수, 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본인부담금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용 단계에서는 훈련된 돌봄서비스 제공자 및 간호사를 파견하여 서비스 계획에 맞춰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종류로는 재가돌봄서비스 제공기관(Home care agencies), 주간센터(day center), 지원거주 제공기관, 거주시설 등이 있다.

한편, 제공절차에 따른 지원 기관의 역할은 상기 기술한 바와 같지만 개인예산제도의 지불 및 사용방식에 따라 구매권한 범위가 상이하다. 지불 및 사용방식에 따라 직접지불방식(Direct Payment), 관리형예산방식(managed personal budgets), 개인서비스펀드방식(individual service funds)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방식을 혼합하여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함께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직접지불방식은 이용자나 이용자가 지정한 사람의 은행계좌에 현금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치매환자를 포함한 장애인, 간병인, 장애아동의 부모가 그 대상이 된다. 관리형예산방식과 개인서비스펀드방식은 이용자가 별도의 계좌 및 예산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자가 서비스 비용을 해당 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차이점으로는 관리형예산방식은 지방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반해, 개인서비스펀드방식은 민간 위탁 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한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자는 예산 집행 종류 및 방식에 대해서는 직접 결정해야 한다. 네 가지 방식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직접접지불방식으로, 신청자가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범위가 넓고 다른 두 방식에 비해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어 개인예산제도의 취지와 부합하기 때문이다(Martinez & Pritchard, 2019).

6) 재정

영국의 성인 대상 사회적 돌봄 예산(adult social care funding)은 대부분 지방정부에서 지출한다. 전체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예산(교육 제외)의 1/3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재원은 지방세(council tax)와 수익사업을 통한 세입(business rate revenues), 중앙정부의 교부금(grant)으로 조성된다(Amin-Smith et al., 2018, 이한나, 2021).

3. 한국에의 시사점

DPs와 PBs 제도는 보편적 조류인 이용자 주도과 선택의 실현을 위한 첨단이고 대세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런 전략은 이용자 선택이라는 요소 이외에도 공급자와 종사자 등의 다른 요소에 대한 검토와 균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PBs 제도의 확대는 제공조직에게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Glending, 2012). 서비스의 구매(계약) 당사자가 지방정부에서 이용자로 달라지기 때문에, 제공조직들은 지방정부와의 대규모 계약의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대신에 PBs 이용자나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개인들에게 서비스를 판매하는데 더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DPs와 PBs의 도입으로 제공기관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몇 가지 구체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Glending, 2012). 첫째, 스스로 PBs를 집행하는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는 문제이다. 둘째, 지방정부와의 대규모 계약을 통해서 취할 수 있었던 규모의 경제가 사라지면서 단위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셋째, 개인단위의 서비스들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거래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넷째, PBs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고용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직원의 이동이 많아진다는 문제이다. 이렇게 복잡해진 시장 상황 때문에 새로운 틈새를 비집고 새로이 진입하는 제공주체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기존 조직도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를 넓혀서 서비스를 다양화시키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선택과 통제 그리고 서비스 유연성을 제고시키려는 이러한 전략은 제공기관들에게

는 더 치열한 경쟁의 환경을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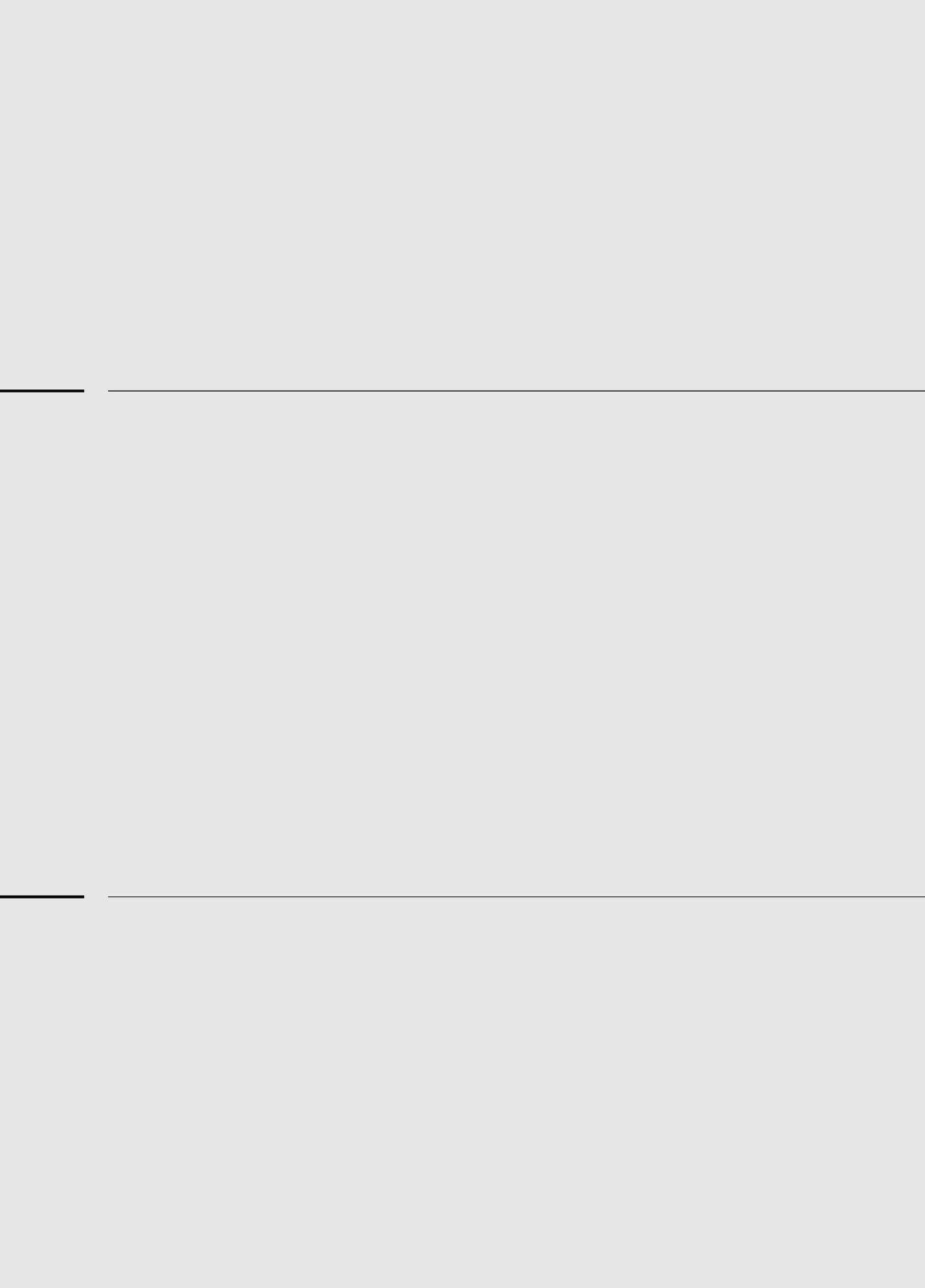
PBs 제도의 확대로 구매자로서의 서비스 이용자의 지위는 더 강해질 것이고, 돌봄 노동자의 고용주로서의 기관의 중요성은 낮아질 것이다. 활기 있는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급자들은 PBs 이용자들이 원하는 지원의 형태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기관은 종사자들에게 기관에 고용되어 일하는 것이 PBs 이용자에 의해 직접 고용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는 사실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Baxter et.al., 2011).

그러나 기관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기관에 고용된 돌봄 노동자들은 초기 훈련과 범죄기록조회(CRB checks)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개인에게 고용된 활동보조인은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범죄기록조회를 받을 필요도 없다. 따라서 기관에서는 인력관리비용이 훨씬 더 든다. 이 때문에 기관은 종사자를 고용하여 유지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PBs는 긍정적인 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다.

영국의 DPs와 PBs 제도로부터 시사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런 점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영국에서 개인예산제도가 실행가능할 수 있게 기반이 되는 제도적 환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편적이고 공평한 서비스 접근성과 확립된 서비스 이용자자격기준(eligibility criteria)이 준비되어 있다는 PBs의 도입은 가능할 것이다. 즉 서비스 진입(신청)창구는 단일화, 누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국가적인 기준이 보급된다면 개인예산제 이용자들이 좀 더 유연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즉 이런 사전적 요소에 대한 확보 없이 DPs와 PBs의 도입 할 경우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전 한국에 도입 할 시 예상되는 난점과 해결책은 무엇일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에서 문제 제기되는 것과 같이 개인예산제도가 과연 장애인의 자기 주도성을 확대시킬 수 있을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또한 어떤 기관에서 평가를 담당할 것인지, 서비스 제공자는 누가 될 것인지 등의 세부사항 논의가 필요하다. 즉 영국의 personalisation, DPs, PBs 등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위해서는 개인예산제가 포괄하는 서비스 범위의 결정과 통합적인 자격 기준 수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개인예산제 금액 산출을 위한 자기주도사정, 자원할당시스템 개발, 개인예산제가 집행되고 난 후 정산과정에서 이용자의 편이를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도입 초기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개인예산제가 좀더 성공적으로 안정감 있게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022년 국외연수 결과보고
영국의 개인예산제도(Personal budgets) 개요 및 한국에의 시사점



Disability Rights 기관 소개 및 시사점

발표 2 기영남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시설국장)

Disability Rights 기관 소개 및 시사점

기영남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시설국장

1. Disability Rights 기관 소개

- 주 소 : Plexal 14 East Bay Lane
Here East Queen Elizabeth Olympic Park
Stratford London E20 3BS
- 전화번호 : 0330 995 0400
- 홈페이지 : <https://www.disabilityrightsuk.org/>
- 이 메 일 : [General enquiries] enquiries@disabilityrightsuk.org
[membership] members@disabilityrightsuk.org
[shop] shop@disabilityrightsuk.org (tel: 0203 687 0790)

- 비전 : 장애인들이 동등한 권력과 권리, 기획의 평등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만들기
- 미션 : 전반적인 삶에서의 모든 장애인의 권리를 위하여 정책 입안자, 기관 및 개인에게 존재하는 장벽을 제거하도록 도전하고 노력한다.
- Disability Rights UK는 장애인이 주도하고, 운영하고, 일하는 영국의 선도적인 조직임
- 영국 전역의 장애인 단체 및 정부와 협력하여 장애인을 위한 더 나은 권리, 혜택, 삶의 질 및 경제적 기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 장애인 고용, 교육 및 기술 습득 관련 사업 수행, 장애인식개선과 관련한 캠페인 추진 등
- 개인예산제 관련 헬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음.

2022년 국외연수 결과보고
Disability Rights

- 개인 예산 헬프 라인 전화 및 이메일 서비스는 개인 및 조직이 개인화 의제의 일환으로 개인예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임.
- 간호 및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 예산의 개념과 2014년 케어법 도입 후 사회 복지 기금에 액세스하는 방법을 안내함
- 사회 복지 기금에 대한 국가 자격 기준, 간호 요구 평가 및 보살핌 및 지원계획뿐만 아니라 국가 자격 기준 및 비 주거 지역 사회 간호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일상생활에서 당사자를 지원하는 직원 / 개인 비서를 고용하는 것과 관련된 책임 및 법적 요구 사항에 대한 직접 지불 및 잠재적인 사용자에게 일반적인 조언을 포함하여 자체 운영 간호 패키지 관리 (예 : 별도의 은행 계좌 개설 및 예산 지출 방법 기록 유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함.

○ 방문 내용

- 2022년 10월 15일 ~ 10월 23일, 7박 9일
- 연수단원 7명과 함께 장애인의 주도적인 삶 보장을 위한 한국형 장애인개인예산제 연구를 위한 연수
- 연수기간 중 영국의 개인예산제도와 관련된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관기관 방문 및 관계자들과의 만남 진행

2. Disability Rights 기관 방문 시사점

Disability Rights UK는 장애인의 주도로 운영하며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영국 전역의 장애인단체 및 정부와 협력해 장애인의 더 나은 권리, 혜택, 삶의 질 및 경제적 기회를 위해 지역 및 국가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단체의 비전은 '장애인이 동등한 권력, 권리 및 기회의 평등을 갖는 사회를 만든다'이고 미션은 '우리는 모든 장애인의 권리가 삶의 모든 측면에 포함되도록 캠페인을 벌인다'이다. 이를 위해서 여러 캠페인을 직접하거나 협력 또는 지원해서 진행하고 채용과 독립생활 등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직장, 일상생활 및 여가 등에서 다양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을 지원하거나 복리후생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2022년 국외연수 결과보고
Disability Rights

Disability Rights UK의 주요 결정은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SMT)를 통해 이뤄진다. 협회 정관에는 이사회는 최소 75%가 장애인이라고 명시돼 있고 실제 이사회는 85%가 장애인이다. 이사회와 직원은 정신건강문제, 자폐스펙트럼, 학습장애, 감각장애, 장기적인 건강상태 및 이동성 장애를 포함한 광범위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

Disability Rights UK의 캄란 말릭(Kamran Mallick) 대표는 2017년 7월 Disability Rights UK의 최고 경영자로 합류했다. 그는 해머스미스에 기반을 둔 장애인단체인 Action on Disability의 전 최고 경영자로서 13년 동안 일했다. 캄란 대표는 또한 척추부상 자선단체인 Aspire에서 일했으며 자신의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운영했다. 그는 Lyric Hammersmith, Wheels for Wellbeing 및 Lloyds Bank Foundation의 이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Candoco 댄스 컴퍼니의 전 의장이자 Inclusion London의 이사이기도 하다. 캄란은 2018년 Shaw Trusts Powerlist 100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장애인에 포함됐으며 2020년에는 상위 10위 안에 들기도 했다.

캄란 대표는 사회적 모델(Social model of disability)을 따른다고 한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당사자인 자신을 방해하는 것은 주변의 환경으로, 사람들의 행실이라든지, 대하는 태도, 주변의 커뮤니티나 지역사회, 도시에 장애물들을 없애면 자신은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장애는 개인적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장애물을 제거하면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는 사회적 모델을 강조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회적 모델 입장에서는 제3자에 의해 우리의 삶이 통제되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 삶을 컨트롤하고 소유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립생활 운동은 한마디로 정부나 제3자보다는 장애인당사자인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게 나은지 결정을 더 잘한다는 것이다.

캄란 대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게 나은지 결정함으로써 자립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장애당사자가 선택, 결정, 통제를 통해 개인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때 장애인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살펴야 한다. 단순히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서 씻고 하는 기본적인 것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

Disability Rights UK는 장애인개인예산제도와 관련된 사정이나 평가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장애인들에게 관련 정보와 권리를 알려주고 어떤 것을 기대하면 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옹호단체들은 장애인개인예산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정부와 계약을 통해 장애인을 옹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즉, 결정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장애인당사자가 지원을 받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모르는 상황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서비스제공자와 사회복지사, 서비스이용자와 함께 옹호자가 서비스이용자에게 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 사람의 권리를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장애인개인예산제도 시행과 관련해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의 권리 안내, 각종 정보 제공이나 서비스 지원 등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한 단체가 단독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두 단체 이상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도 있다. 예산지원방식도 보조금 지원방식이 아니라 사업 수행 입찰에 참여해 정부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한국과는 다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각종 지원은 장애당사자가 단순한 일상생활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정부와 서비스제공자, 사회복지사, 옹호자, 서비스이용자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의 지원은 결정을 돕는 것이 아닌 결정을 위한 이해를 돕는 것이어야 한다. 당연히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고 선택, 결정하는 것이기에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영국의 장애인개인예산제도 관련 서비스 결제방식은 현금이나 송금, 카드 등 다양하게 가능하지만 지방정부마다 다르다.

개인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용처와 용도 역시 그렇다.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다 보니 지방정부마다 장애인개인예산제도를 실행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평가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사회복지사도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만 지방정부 안에서도 사회복지사의 역량에 따라, 누굴 만나는지에 따라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불공평을 두고 캄란 대표는 '우편번호 복권'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제도에 대한 지역 간 차이를 없앨 수 있는 프레임 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유연한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령이 필요하고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서 실제 사회적 돌봄 영역, 건강영역, 교육영역에서 개인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캄란 대표는 사회적 돌봄 영역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씻는 것이라든지, 옷을 입는 것이라든지, 요리나 음식 준비라든지, 식사라든지, 안전한지 등을 평가한 후에 개인예산을 지급한다고 한다. 건강 영역에서는 우선적으로 국가의료제도(NHS; National Health Service)에서 모든 것이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인예산에서는 크게 다뤄지지 않는다. 다만 질병이

있어서 호흡기가 필요하다든지, 집에 간호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들에서 개인예산을 사용한다.

교육 영역에서도 우선적으로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크게 개인예산을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개인예산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비율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영국의 장애인 비율이 18~20%이고 대부분의 장애인은 제도를 알고 있다고 한다. 다만 재정평가를 통해 저축액이 2만 5천 파운드를 기준으로 그 이상인 경우 본인부담금이 있고 저축액에 따라 비율이 나뉜다. 한국에서는 가족 돌봄에 대한 찬반이 있는데 영국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영국은 가족 돌봄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

감란 대표는 돌봄은 '사회적 책임'이라고 했다. 나의 아내는 나를 돌볼 필요는 없다. 나와 아내는 부부로서 일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있는 거지 나를 돌보기 위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이 있지만 대통령 공약으로 도입이 결정됐다. 영국에는 제도 도입 초기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 궁금했다.

감란 대표는 영국도 제도 도입을 위한 논쟁이 많았다고 한다. 과거 정부는 관리가 편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시설에 거주시켰다. 이후에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여러 캠페인 등을 통해서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장애인개인예산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시설에서 사용될 비용을 개인예산으로 요구한 것이다. 결국 그것이 권리가 된 것이다. 그리고 20여 년 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도 운영을 반대하는 단체는 없다고 한다. 어쨌든 사회는 불공정하고 평등하지는 않지만 이런 불평등이나 차별받는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그래야 동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서 그래서 장애인개인예산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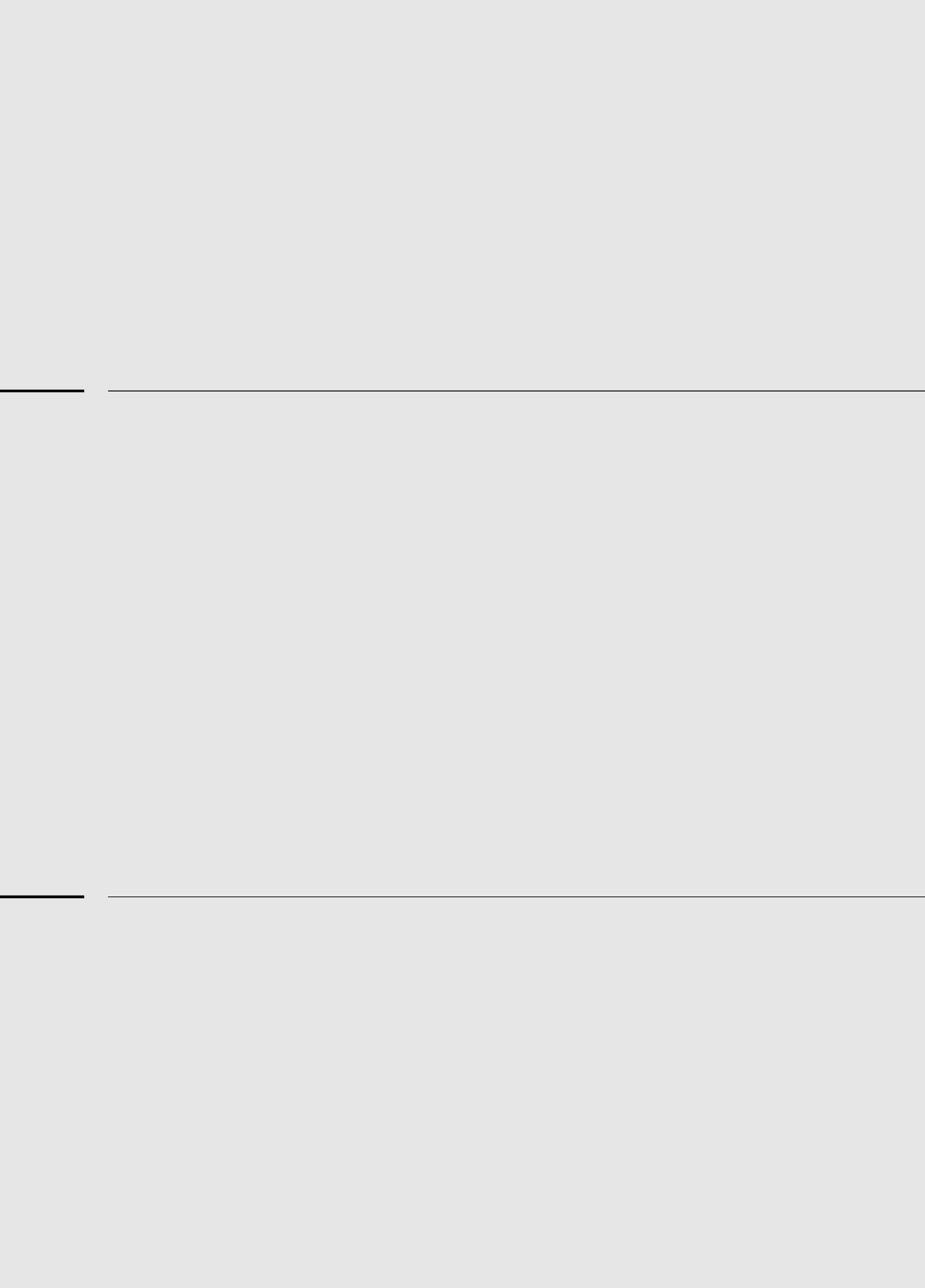
문득 장애인개인예산제도가 장애계의 요구로 추진됐지만 여전히 만족도가 높은지 궁금했다. 이에 감란 대표는 제도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 책임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장애인개인예산제도는 단순히 스스로 못 씻으면 씻겨주고 스스로 못 먹으면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할당된 개인예산을 주고 그 예산을 사용해서 스스로 일상의 삶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삶이 크게 향상됐고 대단히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적어도 제도를 존속에 대한 반대의견은 없고 개인예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고 한다. 대신 충분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됐다고도 했다. 개인

2022년 국외연수 결과보고
Disability Rights

예산을 현금으로 받아서 엉뚱한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캄란 대표는 지방정부는 개인예산 집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고 한다. 서비스이용자는 매달 집행기록을 제출해야 하고 지방정부는 서비스이용자의 개인예산 은행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게 된다. 개인예산의 지출방법은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하던, 장애인활동지원인에게 급여를 송금을 하던, 카드를 쓰던 간에 영수증을 증빙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지방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캄란 대표는 장애인개인예산제도는 장애인의 인권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장애인이 단순히 돈을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금도 내면서 사회일원으로서 기여를 하고 있게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만남을 통해서 한국과 영국을 단순 비교할 순 없지만 영국의 장애인개인예산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장애인단체의 역할은 무엇인지, 장애계에서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영국의 개인예산제도와 IN-CONTROL

발표 3. 정성희 (한국장애인재단 연구기획팀 주임)

영국의 개인예산제도와 IN-CONTROL

정성희 / 한국장애인재단 연구기획팀 주임

IN-CONTROL은 모든 사람들이 좋은 생활을 유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조직이다. 2003년에 장애인과 가족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작은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이 모임은 사람의 권리, 선택, 자립, 통합이라는 4가지 원칙을 제시한 '사람을 가치롭게(Valuing People)' 백서를 작성한 사람들과, 발달장애인들이 평등한 가치를 인정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MENCAP(발달장애인 옹호-서비스 제공기관)팀으로 구성되었다.

IN-CONTROL은 지역사회에 함께 살고, 배우고, 일하고자 하는 자립생활운동의 영향을 받아 사회돌봄지원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개인예산제도와 자기주도지원의 개념을 개발하고 정의하였다. 2003년 영국의 6개 지역(Essex, Gateshead, Redcar and Cleveland, South Gloucestershire, West Sussex, Wigan)에서 각각 특정 주제로 IN-CONTROL에서 적용하는 지원연계(Support brokerage), 자원할당(Resource Allocation System), 자기주도지원, 지원욕구, 다양한 서비스 등을 개발해 나갈 수 있었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비용 증가 없이 지속가능한 혜택을 줄 수 있음을 알릴 수 있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는 13개 지역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사람 우선(Putting People First)"이라는 개인예산제도를 소개하는 정부보고서가 발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인기 사회돌봄(social care)에 대한 국가 정책은 개인예산제도로 변화되었다. 그 이후 정부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교육, 건강, 돌봄에 대한 다른 영역에도 개별유연화(Personalisation) 도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즉, 사람에 대한 존엄성을 가치로 둔 비영리조직의 작은 움직임이 영국 사회돌봄체계(social care system)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IN-CONTROL의 자기주도지원을 함께 배우고 공유하며 전세계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나라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자료와 정보공유, 인식제고, 국제공동체로서 변화 촉진, 업무협력, 리더십강화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스코틀랜드, 웨일즈, 호주, 타즈매니아, 체코 공화국, 미국, 이탈리아, 러시아, 핀란드 등 9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현재 IN-CONTROL은 비영리조직(charity)과 독립된 회사로 이루어진 사회적 기업으로 시민사회, 정부, 다른 비영리조직, 일반상업회사들과 협력적으로 일하고 있다. 민간의 역할과 정부, 학계, 시민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관심과 연구가 제도를 발전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 IN-CONTROL 본³⁾의 이해

IN-CONTROL은 모든 사람들이 좋은 생활을 유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 조직이다.

1) IN-CONTROL의 윤리적 가치(Values)

■ 다양성

- 인간 본연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다양성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삶과 지역사회가 더 풍요로워지고 다채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한다.

■ 커뮤니티

- 사람은 공동체의 일부로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이바지함으로써 성장해 나갈 수 있다.
- 또한, 개인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개방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자가 될 때 성장할 수 있다.

3) 장은 IN-CONTROL에서 보내준 PPT 자료집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 독립생활

-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평범한 삶을 살 권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 권리를 인정하고 지지하여야 한다.

■ 존엄성

- 사람은 모두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따라서 장애가 있거나, 나이, 건강, 환경이 다르더라도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존엄하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지속적으로 삶 전반에 걸쳐 다른사람의 도움•지원이 필요하다. 장애, 노령, 질병 등에 따라 지원의 필요성이 달라지며, 지원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구성원 간에 상호의존이 필요하다고 인식할 중요한 기회이다. 위와 같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IN-CONTROL은 다음과 같은 미션을 가진다.

MISSION

- 모든 사람이 좋은 삶을 살고 가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 나이,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통제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 만들기

2) IN-CONTROL의 역사

IN-CONTROL은 2003년에 장애인과 가족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작은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이 모임은 사람의 권리, 선택, 자립, 통합이라는 4가지 원칙을 제시한 '사람을 가치롭게(Valuing People)'백서를 작성한 사람들과 발달 장애인들이 평등한 가치를 인정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Mencap(발달장애인 옹호-서비스 제공기관)팀으로 구성되었다.

IN-CONTROL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고, 배우고, 일하고자 하는 자립생활운동에 영향을

받아, 사회 돌봄 지원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개인예산제도와 자기주도지원의 개념을 개발하고 정의하였다. 2003년에 영국의 6개 지역(Essex, Gateshead, Redcar and Cleveland, South Gloucestershire, West Sussex, Wigan)에서 각각 특정 주제로 IN-CONTROL에서 적용하는 지원연계(support brokerage), 지원할당체계(Resource Allocation System), 자기주도지원, 지원욕구, 다양한 서비스 등을 개발해 나갈 수 있었고, 시범사업 결과 비용 증가없이 지속가능한 혜택을 줄 수 있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는 시범사업을 13개 지역에서 실시하게 되었고, ‘사람 우선(Putting People First)’이라는 개인예산제도를 소개하는 정부보고서가 발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 돌봄(social care)에 대한 성인기 국가 정책은 개인예산제도로 변화되었다. 그 이후 정부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교육, 건강, 돌봄 등 건강 및 아동 서비스를 포함한 다른 부문에 개인화를 도입을 확대해 나가게 되었다. 즉, 사람에 대한 존엄성을 가치로 둔 비영리조직의 작은 움직임이 영국 사회 돌봄 체계(social care system)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011년 랭커스터 대학의 장애 연구 센터와 함께 개인 결과 평가 도구(POET)를 개발하고 개인예산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가족 간병인의 경험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개인예산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 건강 예산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 및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건강 및 케어 플랜 및 아동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발하였다.

2014년 케어법(Care Act)은 영국의 성인 사회 복지에 관한 법률을 현대화하고 하나의 법령으로 통합함으로써 가장 광범위한 정책 및 개혁을 도입하였다. 현재 IN-CONTROL은 비영리조직(charity)과 독립된 회사로 이루어진 사회적 기업으로 시민사회, 정부, 다른 비영리조직, 일반상업회사들과 협력적으로 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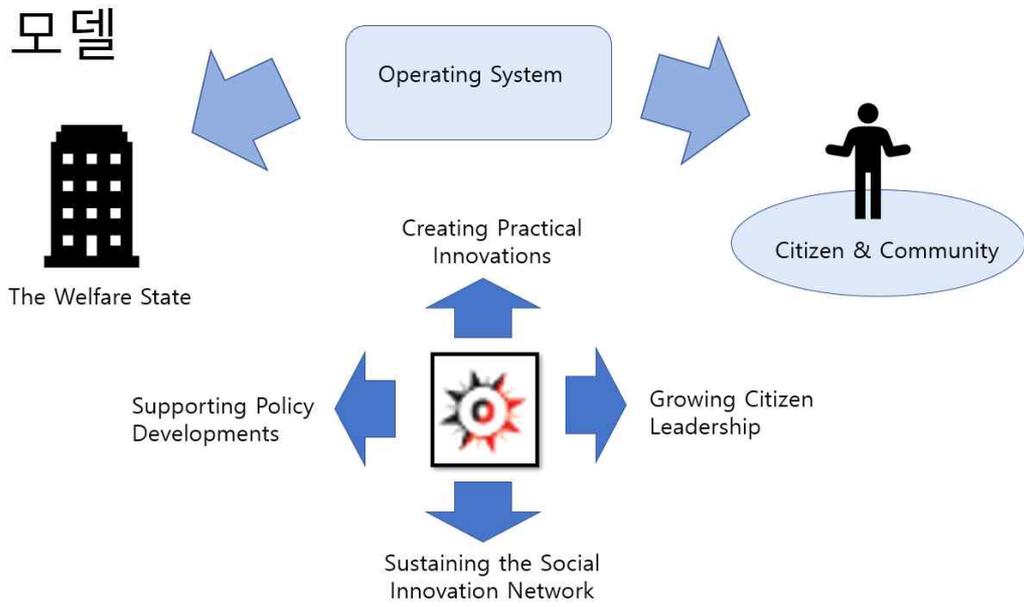
3) IN-CONTROL의 주요 메시지(key message)

- IN-CONTROL은 “사람(people matter)”을 믿는 개인과 집단의 목소리이다.
- IN-CONTROL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과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 일한다.
- IN-CONTROL은 지역사회 연계망이다.
- IN-CONTROL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다.
- IN-CONTROL은 국가개요(National Overview)에 대한 모범적 실천으로 평가된다.
- IN-CONTROL은 상식이 통한다고 믿는다.

4) IN-CONTROL의 목표

 Connect	연결	IN-CONTROL은 시민권 억압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멤버십 네트워크를 만들고 유지시킨다.
 Understand	이해	IN-CONTROL은 시민에 의해 네트워크의 정보, 분석, 지식을 공유하면서 복지제도와 새로운 실천방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측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Innovate	혁신	IN-CONTROL은 복지개혁을 위해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고 시험하여 자 기주도 지원의 경계를 확장하고 시민권을 증진하기 위한 개혁을 촉진한다.

5) IN-CONTROL의 모델



2. 개인예산제도와 IN-CONTROL

1) 영국 사회돌봄서비스(Social Care Services)의 제도 변화과정

‘개인예산제도’는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돌봄서비스(Social Care Services)⁴⁾의 내용을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방식을 이용자의 욕구 중심 서비스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아주 큰 성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나오게 된 계기가 된 사회정책은 1996년 Community Care 법에 의해 도입이 된 직접지불제도(Direct Payments)라고 할 수 있다.

(1) 직접지불제도와 개인예산제도의 시행 배경

직접지불제도는 영국에서 2003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현금 지급제도를 제도화 한 것으로 장애가 있는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 현물 서비스를 현금으로 제공하여 이용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한국장애인재단, 2015). 영국은 1993년 시행된 National Health Services and Community Care Act(NHSCCA, 1990년 제정법률)을 통해 지방 정부가 직접제공 방식의 서비스를 민간영역(비영리기관이나 영리기관)에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돌봄 서비스의 시장화 민영화를 표방한 정책이었으며, 실제적인 정치 슬로건은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을 통한 이용자의 참여의 진작이었다(김용득, 2013). 그러나 정보와 선택능력이 취약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그리 신장되지 않았다.

장애인단체는 NHSCCA를 시행하는 정부가 표방하는 이용자의 참여 진작은 허구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가했고, 시장화·민영화 된 서비스 대신 정부가 이용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스스로 선택과 통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사회서비스의 직접지불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4) 영국의 social care services는 특히 성인기의 사회 돌봄 서비스란 사회복지에서 흔히 말하는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유사하다.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란 ‘삶의 질’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민감기업들이 저(低)수익성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복지서비스를 뜻한다. 예를 들어 간병·가사·간호·보육·노인수발 서비스, 외국인 주부·저소득가정 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교육 서비스, 문화·환경 관련 서비스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민간 참여가 부진하기 때문에 정부·지자체·비영리단체 등이 서비스를 제공한다(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으로 정부는 재정이 급격하게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전체 사회서비스의 정부 지출의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김용득, 2013). 그 이유는 이용자의 경우 스스로 서비스 제공기관(인력)을 찾아야하고, 또 제공기관에 지불한 비용을 지방 정부에 정산 보고하는 책임을 지는 등 행정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로부터 지급 받은 현금으로 해당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결국은 이용자가 서비스 수행자를 고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용자는 고용주의 책임을 이행해야하는 부담도 지게 된 것이다. 특히 발달장애인 들은 장애의 특성상 직접지불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협력적 노력에 의해 개인예산제도가 실행되었다(이승기, 2014).

개인예산제도는 현금을 지불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서비스의 설계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이용자의 자기주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김용득, 2013). 이와 함께 개인 예산제도로 받은 현금을 계획적으로 지출하도록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과 지원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자기주도 지원을 증시하게 된 것은 지적 장애인과 자폐장애인들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의한 자기 삶의 선택과 통제라는 장애운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직접지불제도와 개인예산제도에 의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전문가들은 장애인들의 자기주도적 지원서비스의 조정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계획을 계획하고 제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연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2) 개별유연화·자기주도지원의 중요성

개인예산제도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기주도적 지원이다. 즉, 장애인을 서비스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전략이 주목받으면서 나타난 개념으로 선택권·자기 결정권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연령, 장애에 상관없이 모든 성인은 그들의 삶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에서는 스스로 삶을 영위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자신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사회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그의 가족과 친구와 함께 자신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가용할 수 있는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와 같은 자기주도적 지원에 대한 요구는 개별유연화(personalisation)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기대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2022년 국외연수 결과보고
영국의 개인예산제도와 IN-CONTROL

Personalisation은 개인의 강점과 선호를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돌봄과 지원의 중심에 개인을 놓는 것을 의미한다(Carr, 2010). 자기주도지원과 개인예산제도 등 개별화된 서비스는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식별하고 언제 어떻게 지원을 받을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어 이용자의 입장을 대폭 고려한 것이다. 자기주도지원과 개인예산제도는 '잉글랜드 사회 돌봄 서비스 역사의 가장 강력한 변화'로 묘사되고 있다(Glasby & Littlechild, 2002/2013).

장애인 자신이 주류사회에서 교육받고,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 지원을 개척한 사람들이 모여 2003년 IN-CONTROL을 설립했다. 또한 IN-CONTROL은 장애인들의 자기주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인예산 시스템을 개발했다. 웹사이트에서 보면 IN-CONTROL은 국가보장을 받는 비영리조직이며, 모든 사람들이 좋은 생활을 하고 가치있는 공헌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이 포함된 사회를 위해 일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IN-CONTROL은 개발된 개인예산 시스템을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여 지방정부와 장애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냈다. 긍정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늘지 않고 유지되거나 오히려 절감되기도 한다는 점이며, 두 번째로는 자기주도적 지원이기에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는 점이다. 그 후로 여러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 실행된 개인예산제도는 장애인의 삶에 큰 도움이 되며 차별예방에도 성과를 나타내었다.

2008년부터 중앙정부는 개인예산제도를 시행했으며 IN-CONTROL은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에 그들이 개발한 자원분배시스템(Resource Allocation System:RAS)을 공유하여 개인예산제도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장애인의 욕구에 입각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접근성과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개인예산제도가 확대되기를 원하고 있기까지 하다.

2022년 국외연수 결과보고
영국의 개인예산제도와 IN-CONTROL

2) IN-CONTROL에서 개발한 Personal Budgets의 주요내용

(1) 개인예산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IN-CONTROL의 주요 적용원칙

가) 자립생활권(Right to Independent Living)

: “나는 자립적인 시민으로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를 가진 시민으로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나) 개인예산권(Rights to Personalised Budget)

: “나는 지원에 사용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알고 있다.

자신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유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사용되는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자기결정권(Rights to Self-Determination)

: “나는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지원, 대리인이 있다”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가능한 한 자신의 흥미와 선호도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라) 접근권(Rights to Accessibility)

: “나는 규칙과 체계를 이해할 수 있고, 쉽게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자신의 지원을 통제할 수 있는 장애인의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규칙체계는 명확하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마) 자금유통권(Rights to Flexible Funding)

: “나는 자금을 융통적,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인예산을 사용할 때 불필요한 제한없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책임성 원칙(Accountability Principle)

: “나는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와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해야 한다”

장애인과 정부는 서로에게 결정을 설명하고,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할 책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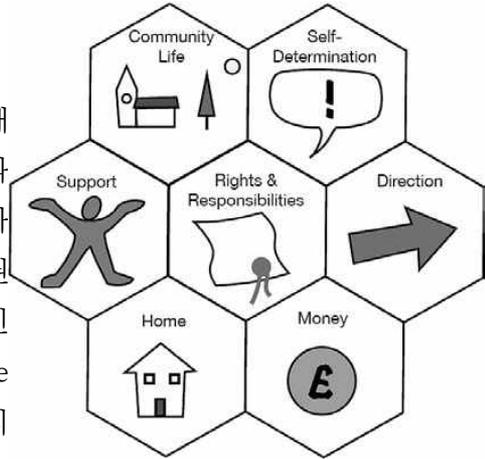
사) 역량 원칙(Capacity Principle)

: “적당히 충분한 도움을 제공하라. 나도 스스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는 자신의 지원을 관리하고 기술을 습득하며, 기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

(2) 자기주도지원(Self-directed support)

자기주도지원은 IN-CONTROL에서 개발한 새로운 사회돌봄체계(social care system)로 국가와 개인의 관계 변화를 위하여 개인예산제도를 실행하는 정부 정책이다. 이러한 자기주도 지원은 시민권 모델을 통하여 발전되었다. IN-CONTROL은 시민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스템(welfare system)을 개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



는 빈곤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빈곤 해방만이 사람들의 기대를 높이고, 잠재성을 실현하며,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IN-CONTROL은 시민권의 개념이 현재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용한 방버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존의 사회복지 시스템을 개혁(reforming)하고자 노력해 왔다. 또한 시민이 주가 되는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생산적인 접근이라고 여긴다. 즉, 사회복지 시스템의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서 시민권을 IN-CONTROL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각자 통제해야 한다.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결정은 가능한 우리의 의견에 근접해야 한다.

나) 방향성(Direction)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는 목적성과 자기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

다) 현금(Money)

우리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을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집(Home)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자신의 집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지원(Support)

우리는 자기 스스로 살아가기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지원은 우리의 통제하에 둘 수 있어야 한다.

바) 지역사회에서의 삶(Community Life)

우리는 가족과 지역사회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사) 권리와 책임(Rights & Responsibilities)

우리는 법적으로 시민권을 존중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빈곤과 시민권은 대립되는 것이지만 단순히 빈곤을 피하는 것이 시민권을 고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빈곤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여러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시민권

2022년 국외연수 결과보고
영국의 개인예산제도와 IN-CONTROL

을 침해하는 주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즉, 단지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직결되지 않지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과 관점이 필요하다. 예컨대 자기주도적인 삶은 시민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IN-CONTROL은 시민권을 고양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7개의 정의에 따라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고자 국가,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함께 일하며 자기주도지원이라 불리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자기주도지원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주도지원은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으로 7단계로 구성되어 있다<표1>. IN-CONTROL에서 초기에 적용한 자기주도지원의 각 단계에 따라 [예산 구성을 위한 자원분배시스템(resource allocation system)<표2>, 지원계획과정에 대한 설명과 지원계획의 제공인력<표3>, 개인예산의 관리 과정에서 지원하는 사람<표4>]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2022년 국외연수 결과보고
영국의 개인예산제도와 IN-CONTROL

〈표1. 자기주도지원 7단계〉

 <p>1. Set Personalised Budget</p>	<p>개인예산구성 IN-CONTROL의 자원분배시스템을 사용하여 개인은 자신에게 분배된 재정을 알게 되고, 자신의 예산을 어느 정도 통제할지 결정한다.</p>
 <p>2. Plan support</p>	<p>지원 계획 개인이 적합한 도움을 얻기 위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한다. 이 과정에서 지원 중개인(support broker: 개별지원), 지원제공자(support provider : 신탁), 관리자(care manager)의 도움을 받는다.</p>
 <p>3. Agree the plan</p>	<p>계획 동의 지방정부는 개인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계획을 점검한다. 예산범위 내에서(in budget) 인간중심적(person-centred)으로, 명확하게(clear), 실행적으로(practical), 안전하게(safe), 자기 결정적(self-determined)으로 관리(managed)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p>
 <p>4. Manage individual budget</p>	<p>개인예산 관리 개인예산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한다. 직접 관리, 대행자(representative), 신탁(trust), 중개인(broker),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 관리자(care manager) 등에 의해 관리될 수 있다.</p>
 <p>5. Organise support</p>	<p>지원구성 필요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구성한다. 직원모집과 같은 개별 서비스(personal services), 재정서비스(finance service), 보험(insurance), 활동지원 관리(management), 서비스 계획 변화나 자원모집 등의 연계(brokerage)와 같은 영역이 있다.</p>
 <p>7. Review and learn</p>	<p>삶의 영위 지역사회 안에서 가족, 친구 등과 함께 지원을 이용하여 살아간다. 활동보조(personal assistance), 친구, 가족 이웃의 지원(community support), 지역 참여 활동(community inclusion), 거주(housing), 직업(work), 설비(equipment), 기술(skills) 등에 이용한다.</p>
 <p>6. Live life</p>	<p>검토와 교훈 관리자(Care manager)는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 계획을 변경한다.</p>

1단계 개인예산구성에서 자원배분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을 책정한다.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RAS는 자금제공자(funder)들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지원과 합의된 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설명해 주는 단순한 방법이다. 영국의 중앙정부는 사회 돌봄(social care)영역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실천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개인예산제도를 적합할 수 있도록 개별적 유연화(P

ersonalisation) 개념을 도입하였고, 21세기에 요구되는 적합한 접근을 개발하고, 기금제도(funding system) 개혁을 위하여 자기주도지원의 사정과정에서 RAS를 도입하였다. RAS의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다(Glasby & Littlechild, 2002/2013).

〈표2. 자원분배시스템의 발전과정〉

RAS 버전1	RAS의 첫 번째 버전은 IN-CONTROL이 생기기 전에 Simon Duffy에 의해 먼저 개발되었다. 첫 번째 버전은 욕구, 복잡성, 지역사회 자원과 같은 세 가지를 기준으로 예산을 구성하였다.
RAS 버전2	2003년 IN-CONTROL이 위건(Wigan)지역에서 초기 시범사업을 할 때 Simon Duffy는 동료들과 함께 조금 더 복잡한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전형적인 서비스들의 비용을 상호 연관시킴으로써 개인예산 수준을 설정했다.
RAS 버전3	2005년 John Waters가 기술 감독관으로 합류했으며 더 복잡한 욕구분석모델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서로 다른 욕구에 수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RAS 버전4	2006년 지방정부는 다양한 돌봄집단의 더 많은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원했다. John Waters는 욕구의 수준을 나타내는 수치를 곱해 만든 '기준 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했다.
RAS 버전5	2007년 존은 IN-CONTROL의 협력조직인 시메트릭 SD와 공동으로 인터넷을 사용해 실행할 수 있는 버전을 개발했다. 이 버전은 e-RAS라 불린다. 이 버전에서 IN-CONTROL은 과거의 비용자료를 참조하여 개인예산을 구성하는 수준을 넘어 현장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예산의 수준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2단계 지원을 계획하는 과정은 이용자의 욕구를 존중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문자 그대로 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간중심적(Person-Cented)접근을 기반으로 하여 IN-CONTROL에서는 당사자들이 읽기 쉬운 방법으로(easy read version)자료를 개발하였다(Sanderson & Tyson, 2011). 읽기 쉬운 자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5).

■ 지원계획(Support Plan)은 무엇인가요?

- 지원계획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원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개별총예산(Individual Budget)을 알려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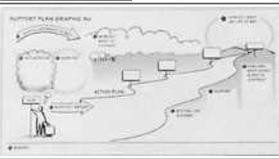
5) 읽기 쉬운 자료는 IN-CONTROL홈페이지에서 모두 열람 가능함

■ 지원계획을 세우기 위해 어떤 질문을 할까요?

(지방정부가 지원계획에 동의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 ①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②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 ③ 지원을 어떻게 분배할까요?
- ④ 어떻게 현금을 사용할까요?
- ⑤ 지원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 ⑥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 ⑦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 지원계획을 세울 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p>위에서 제기한 7가지 질문 이용하기</p>
	<p>IN-CONTROL에서 개발한 다양한 자료집 이용하기 -발달장애인과 지원자를 위한 In the Driving Seat, Top Tips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Lide and Support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A Step-by-Step Guide -노인을 위한 Support Planning and Older People</p>
	<p>picture template를 채워가며 세우기</p>
	<p>인간중심계획(person-centered plan)이용하기 - Essential life planning - Personal Future Planning - McGill Action Planning System(MAPs) - Planning Alternative Tomorrows With Hope(PATH)</p>

- 인간중심 계획과 지원계획(person-centered plans and support plans)은 다릅니다.
 - 지원계획은 지방정부나 타인에게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 지원계획은 지원에 필요한 현금이 얼마인지 알려줍니다.
 - 지원계획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현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 지원계획에서 세울 수 있는 현금의 용도와 용처
 - 도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용도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람의 지원계획은 모두 다릅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원계획을 세우기 위해 제공되는 인력은 다음과 같다(Glasby & Littlechild, 2002/2013).

〈표3. 지원 계획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인력〉

본인, 친구, 가족	본인, 친구, 가족
지원중개인 (Support Brokers)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고 계획하는 사람
지원 제공자 (Support Providers)	개인이 신뢰할 수 있는 지원 제공자
케어 매니저 (Care Managers)	일부분은 케어 매니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주도지원체계에서 케어 매니저는 가장 복잡한 욕구를 지니고 있으면서 다른 지원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하고, 지원의 분배와 평가과정에서 편향적이면 안되므로 모든 사람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에 함께살고 있는 사람 (People in the Community)	중개(brokerage)는 전문적인 중개인이 아니라 개인, 가족 구성원, 지역사회의 조직 등 자원을 관리하고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4단계에서 계획에 대한 동의 후 지급된 예산은 사회서비스국(social services department)의 동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개인의 예산을 관리할 수 있다(Glasby & Littlechild, 2002/2013).

〈표4. 개인예산 관리에서 제공되는 지원인력〉

장애인 (Disabled person)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
대리인 (Representative)	대리인이 대신하여 관리한다. 대리인은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신탁 (Trust)	장애인을 대신해 돈을 받고 통제하기 위해 신탁을 설립할 수 있다. 상속받은 아동을 위해 설립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이다. 장애인을 대리하여 설립하고, 사회서비스국과 직접 계약을 맺고, 신탁계좌로 기금을 옮길 수 있다.
중개인 (Broker)	개인이나 기관의 중개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중개인을 일부에만 사용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구성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 (Service provider)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의 돈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서비스 펀드(individual service fund)와 구별해서 관리해야 하고, 개인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관리비용은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케어매니저 (Care manager)	현행 제도에서 서비스 계획과 구성을 대행한 케어매니저가 대신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본인 스스로 혹은 위에서 제시된 지원인력과 계약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계약은 서비스 이용의 부분과 전체, 가격의 범위, 융통성의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직접, 기관, 서비스를 위한 계약 3가지 모델로 모델 1과 2에 대한 내용은 IN-CONTROL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델 3은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한 모델이다. 각 모델에 대한 영역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Duffy, 2008; 김용덕, 2013).

Model 1	Direct Contracts(직접계약)
---------	------------------------

① Model 1.1 : Individual Contracts(개인 계약)

지원 욕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② Model 1.2 : Representative Contracts(대리 계약)

지원 의사결정(support decision-making)원칙에 따른 대리자와 계약

③ Model 1.3 : Trust Contracts(신탁 계약)

법적으로 인정된 신탁회사와의 계약

2022년 국외연수 결과보고
영국의 개인예산제도와 IN-CONTROL

Model 2	Management Contracts(관리 계약)
---------	-----------------------------

① Model 2.1 : Broker Contracts(중개인 계약)

개인예산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직원과의 유료 고용인과의 계약

② Model 2.2 : Individual Service Fund Contracts(개인서비스 기금 계약)

개인예산을 관리하기로 한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

Model 3	Contract for Service(서비스 계약: 개인, 집단, 개인과 집단 중복)
---------	---

① Model 3.1 : Spot Contracts(부분 계약)

서비스, 가격, 고용 모두 서비스를 구매하는 시점에 따른 합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비용이 지불됨.

공급자의 불안정성에 따라 가격이 높게 책정될 수 있음.

② Model 3.2 : Block Contracts(포괄 계약)

미리 정한 시간 또는 사람 수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사전에 지급함.

③ Model 3.3 : Cost & Volume Contracts

약속한 서비스에 대하여 Block방식, 약속한 양을 초과하는 서비스를 Spot 방식을 조합하는 방법.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안전성과 유연성이 있음.

④ Model 3.4 : Grants(보조금)

특정 서비스에 대한 기금이나 공동기금에 합의.

전달된 서비스와 비용 간의 관계를 약하게 만들 수 있음.

지방정부의 비용지불이 이용자 수나 서비스 양과 연결되지 않음.

⑤ Model 3.5 : In-house Service Level Agreement

엄격하게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계약조성의 전체 구조안에서 commissioner가 스스로 직접서비스 전달을 개념화할 수 있도록 Service Level Agr

2022년 국외연수 결과보고
영국의 개인예산제도와 IN-CONTROL

ement(서비스 수준 동의)에서 허용하는 합의.

2003~2005년에 사용한 자기주도지원은 위와 같이 진행되었고, 2011년에 Mencap과 함께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새로운 자료집(fact sheet)을 개발하였다. 초기 방식과 자료집의 틀은 유사하지만 용어나 과정의 작은 부분들이 변화되었다. 자료집에 따른 자기주도지원 단계를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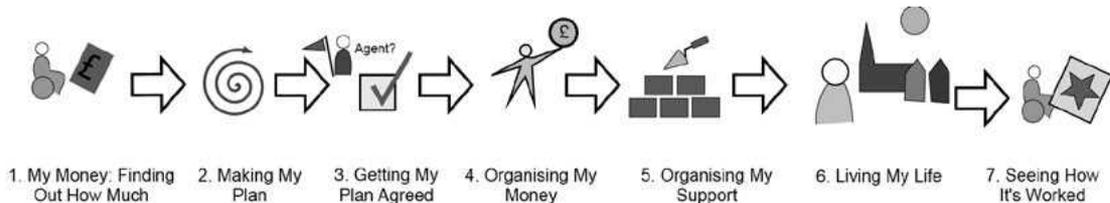
〈표5. Fact Sheet 자기주도지원 7단계〉

<p>1. My money - finding out how much I have</p> 	<p>나의 자금 “나는 00원을 받았어” 자기평가설문지(self-assessment questionnaire)로 평가하여 지방정부는 지원에 필요한 금액을 알려준다(RAS). 자기평가 설문지는 필요한 돌봄(식사, 세면, 쇼핑, 관계(가족, 친구), 지역사회(상가, 도서관, 교회), 직업과 레저, 의사결정, 안전(가스사용, 계단 이용), 욕구/위험(타인을 위험하게 하는 행동), 가족 돌보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p>
<p>2. Making my plan</p> 	<p>계획 세우기 “누구랑 계획을 세우지?” 삶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것과 필요한 것에 대하여 지원계획을 작성한다. 지방정부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 나에게 중요한 것, 원하는 변화, 지원배열, 예산, 지원관리, 삶에 대한 통제, 예측되는 실전에 대하여 질문한다. 계획을 함께 세우는 Support broker는 가족, 친구, 사회복지사, 전문가, ILcenter 직원 등이다.</p>
<p>3. Getting my plan agreed</p> 	<p>계획 세우기 지원계획에 동의하기 “맞아, 좋은 계획이야” 지방정부는 돈을 제공하기 전에 지원계획에 동의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질문했던 내용, 건강과 안전, 지원에 대한 통제 등을 확인하고 동의해 줄 수 있다. IN-CONTROL이 제작한 야식(fact sheet)을 사용할 수 있다.</p>
<p>4. Organising my money</p> 	<p>자금 구성 “은행에 계좌 개설했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지방정부가 직접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스스로 관리할 수도 있지만 필요한 경우 가족이나 친구, 지역조직, 신탁, 고용인(중개인, 옹호가), 서비스 제공자, 관리자나 사회복지사 등이 관리해 줄 수도 있다.</p>
<p>5. Organising my support</p> 	<p>지원 구성 “서포트를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어” 스스로 지원을 조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지원의 종류는 일상지원(natural support), 가족과 친구관계(family and friends), 개인별 지원서비스(individual support service), 전문적 서비스(specialist support)등으로 구성한다.</p>

2022년 국외연수 결과보고
영국의 개인예산제도와 IN-CONTROL

<p>6. Living life</p> 	<p>삶을 살아가기 “내 삶은 변화되었어”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돈을 사용하는 것. 5단계에서 구성된 지원을 조직하여 일상적으로 즐겁고 안전한 장소에서 여가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고, 지역사회 안에서 친구들과 관계를 맺으며 휴일을 즐긴다. 효과적으로 예산을 활용하여 활동지원(personal assistants), 지역사회 지원(community support), 지원 속의 삶(live-in support), 지역사회 참여(get involved in the community), 거주(housing), 직업(work), 설비(equipment), 자립생활 기술(skills), 비용 공유(shared costs), 휴식(take a break), 서포티드 리빙(supported living : 자기 집에서 지원받으며 살기), 전문적 치료 이용(theripists and specialist) 등을 이용하여 살아간다.</p>
<p>7. Seeing how it worked</p> 	<p>과정을 돌아보기 “잘 사용했어. 하지만 이거는 바꾸었으면 해” 운영 과정에서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면 지원 계획은 바뀐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예산 사용을 검토하고, 지방정부는 1년에 한번씩 검토한다. 지원계획이 잘 이루어졌는지, 예산은 계획에 따라 사용되었는지, 잘 사용하여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아본다. 가족, 친구, 지원팀(circle of support), 옹호가, 서비스제공자, 브로커 등이 검토회의에 참석한다. 검토회의에서는 삶의 변화, 예산의 사용, 통제의 변화, 지원받기&관리, 다음에 활용할 서비스, 자기주도지원 이용에 대한 과정 공유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p>

[그림1] 자기주도 7단계



자기주도지원은 이용자 중심으로 모든 과정이 이루어져있다. 단지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필요한 욕구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활용방법을 지원해 주는 수단이 현금인 것이다. 이러한 가치를 비영리단체에서 개발하였고, 그 가치를 인정하여 국가가 활용하고 있다. 국가는 항상 수혜자(recipient)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에게 소비자(consumer)로 관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주도지원은 직접 서비스 현금지급(direct payments)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발달장애인, 노인, 아동 등)들이 소비자로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3) POET(Personal Outcomes Evaluation Tool) : 개별성과측정도구

IN-CONTROL, The Centre for Disability Research at Lancaster University, Think local Act personal은 10년동안 함께 개인예산제도가 실제 삶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POET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초기엔 성인기 사회서비스(social care)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보고서를 통해 4,000명 이상의 개인예산제도를 이용한 당사자와 관련자들에 대한 경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엔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육, 보건, 돌봄(Education, Health, Care: EHC), 장애나 특수교육 욕구를 가진 사람(Special Educational Needs and/or Disabilities : SEND)으로 확대하여 조사·연구하고 있다. 확장된 영역에 따라 8,000명 이상의 사람들의 경험이 국가 연구 자료로 활용된다. 즉, POET이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모든 질문에 답할 수는 없지만, 이용자의 경험을 통해 최적의 서비스를 확인하고 적용해 나가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014년 성인 POET의 infographic은 다음과 같다.



※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

-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인예산을 이용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2배 정도 좋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 자신의 의견을 반영된 돌봄비(carers)도 유의미하게 더 좋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 개인예산 과정을 수월하게 세운 사람들은 3배 이상 좋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 활동보조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예산을 이용한 사람은 기존의 서비스를 이용했던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 자신의 지원계획을 세울 때 도움을 받고, 현금이 어떻게 예산으로 활용되는지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성별, 인종, 나이, 사회적 돌봄집단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개인예산, 서비스 현금지급제도, 이행 관리, 개인 서비스 기금의 유형은 결과에 작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 개인예산제도를 이용한 사람들 중에 적어도 2/3이상의 응답자가 존엄성, 자립, 지원 분배, 친밀감, 삶의 질, 정신 건강, 삶에 대한 통제, 안정감, 가족 관계, 고용 관계, 자존감과 같은 15개 항목에서 11개 이상 더 나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 80%이상의 사람들은 개인 예산이 삶의 질과 지원에 대한 존엄성을 더 좋게 만들었다고 표현하였다.

3. IN-CONTROL, Personal Budget 관련 시사점

개인예산제도는 개별유연화를 제도적으로 실현한 것으로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소망에 따라 맞추어진 서비스와 그 이용 과정, 이에 대한 지향을 의미한다. 돌봄 급여를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 개인예산제에 포함되나 급여의 유형보다는 ‘유연하고 자기주도적인 서비스 이용’이 제도의 핵심으로 급여의 유형은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영국 IN-CONTROL 사례를 통해 국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장애인 서비스의 확대와 개별 제도의 개선

충분한 장애인 서비스의 확보는 개인예산제 수립의 기본적 전제이자 정책과제이다. 여기에서의 ‘충분한 서비스’는 개인의 욕구에 근거하여 할당되는 예산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수와 서비스 제공량의 충분성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 현재 장애인대상 서비스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활동지원은 지자체 추가 급여를 통해 24시간 이용이 보장되나 수급 불균형이 만성화된 지역이 있어 지역 간 격차가 크고 특히 최중증의 성인 발달장애인은 활동지원에서 기피되는 경우가 많고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크다. 이에 개인예산제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는 서비스의 양·질적으로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

2) 이용자 관여 강화를 통한 이용자 주도성 제고

영국에서 개인예산제도는 성인을 시작으로 장애아동,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비장애 아동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전체적인 사회돌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이후 장애인을 위하여 많은 법이 제정되고, 빠른 속도로 제도와 서비스들이 생성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관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국가, 장애인 관련 기관, 장애인 당사자 사이의 관계는 협력적이기보다는 제공자와 수혜자간의 보이지 않는 위계질서가 생겨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예산제의 원칙인 이용자 중심이 서비스 이용의 전 과정에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개인예산제의 일반적 설계 형태인 유연한 급여 범위

외에도 이용자 주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 원칙의 법령, 사업지침 등 명문화 해야 하며, 이용자가 주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평가도구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도구를 활용하여 의사능력이 부족한 이용자를 위한 의사결정서비스와 옹호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책무성 강화

개인예산제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욕구를 평가하고 지원계획을 수립 및 승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적 역량이 중요하다. 개인예산제의 효과가 확대될 수 있는 지역사회 여건을 마련하는 데는 당사자를 비롯한 관련 조직들의 건전성, 수행 역할의 포괄 범위와 전문적 역량, 관련 네트워크 활성화 등 개인예산제 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의 보장이 중요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이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기관과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업의 성과를 제고 하고 민관협력을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조직 내에 고유 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인력과 조직의 지원이 기본이자 필수 요소일 것이다.

4) 제공기관 지원 방식 서비스 유지와 기반 강화

개인예산제는 필연적으로 사회복지의 시장화 민영화를 촉진하며, 서비스 이용자의 권한은 구매력을 지닌 소비자의 지위를 반영한다. 이용자 선택과 통제 권한의 강화라는 기조로 모든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자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장화의 부작용을 부각할 수 있어 기존 제공기관 지원방식와의 공존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응급서비스, 기본적인 정보 제공, 낮은 수준의 서비스 연계와 조정, 지역사회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등은 상품의 형태로 매매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공자 지원방식을 유지하며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질의응답

Q. 신청자격(서비스대상) 은 어떠한가?

- ▶ 자기 삶에 대한 선택과 결정은 연령과 무관하기에 연령 상한이 없다.
- ▶ 장애유형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 자기 주도성을 위해 선택과 결정이 중요한 제도 임이기에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충분한 정보 제공과 외부 조력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Q. 급여 지급방식은 어떠한가?

- ▶ 급여 지급방식은 이용자 또는 가족 스스로 관리하거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거나 조력인을 통해서 관리할 수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혼용하는 방식이 있다.
- ▶ 예산을 이용자 또는 가족 스스로 관리하더라도 정산 등 처리절차를 지원하는 조직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관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Q. 급여액과 급여의 범위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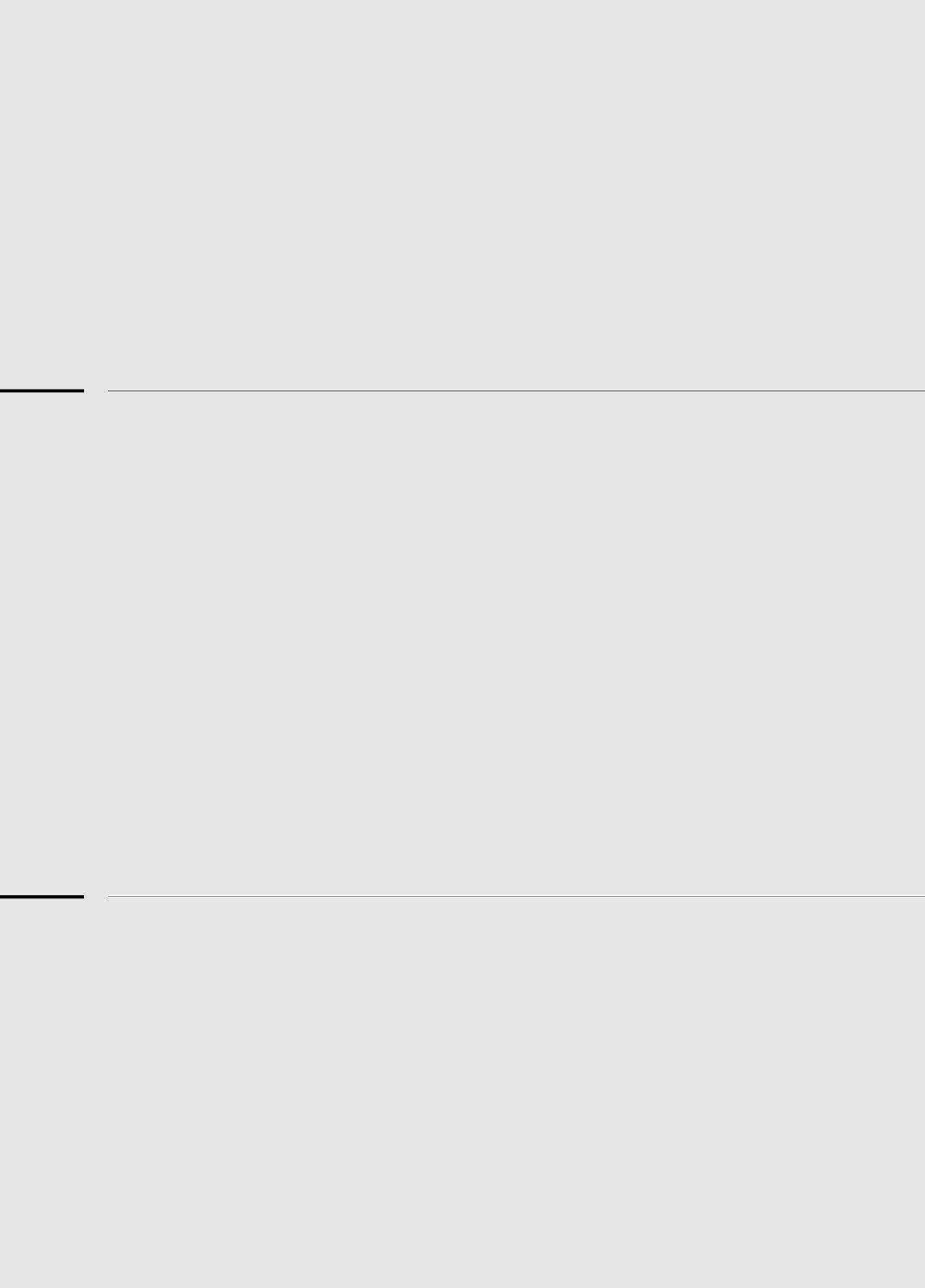
- ▶ 급여액과 급여의 범위는 다양하며 자원분배시스템(Resource Allocation System:RAS)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social worker_지자체 내 심사단이 참여하기도 하며, 급여액의 수준뿐만 아니라 사용처와 용도의 제한범위가 엄격하거나 유연할 수 있다.

Q. 서비스제공자의 범위는 어떠한가?

- ▶ 이용자에 따라 지자체에 따라 가족에 의한 돌봄을 서비스에 포함되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 등 위기상황에서는 가족돌봄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 ▶ 가족 돌봄을 허용하는 것은 서비스 질의 저하나 부당수급 등 우려가 있으나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Q. 정책 실행에 있어 정부와의 협력 관계는 어떠한가?

- ▶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의지와 경험을 밑바탕으로 가족들의 도움을 받은 것이 정책의 시발점이 되었다. 현재는 학계, 정부, 장애인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정부 정책 관련 법령 체계화 및 개정, 전국적 아젠다 연구 등을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다.



Kingston Centre for independent Living

발표 4. 문영임 (한국장애인재단 연구기획팀 팀장)

Kingston Centre For Independent Living

문영임 / 한국장애인재단 연구기획팀 팀장

킹스톤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1963년에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기관이다.

이에 장애인당사자들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의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킹스톤 자립생활센터의 비전

- 장애인의 목소리를 듣기
- 장애인이 선택한 만큼 독립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삶의 질 개선
- 물리적 환경에서 IT, 건강, 교육, 고용 및 주거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접근성 및 선택권 보장

2. 킹스톤 자립생활센터의 주요 사업

- 주거, 고용, 교통 등 장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정보 및 상담 제공
- 장애인 권리 및 권익 보장을 위한 옹호 서비스 제공
- 장애인이 스스로 본인의 돌봄 서비스를 선택 및 통제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직접지불제

및 개인예산제도 지원

-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사회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포용적 네트워크 구축
- 장애인이 본인의 신체적 손상을 극복하고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컴퓨터 보조장비 및, 보조기기 등 기술 솔루션 제공
- 장애인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휠체어 경사로와 접근 가능한 욕실 설계 등 주택 개조 서비스 제공

현재 KCIL에서는 성인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 아동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SEND라고 부르는데 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y, 즉 특별한 교육적 욕구가 있는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CIL에서는 영국 중앙정부 및 정부와 지방 구청(council)과의 계약을 통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와 장애인 사이에서 서비스 연계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브로커라고 명칭한다. 따라서 KCIL에서는 brokerage service 또한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지자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될 수도 있으나 KCIL과 같이 민간 비영리단체에서 제공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특정 레스토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이에 수동적인 안전 규정(passive safety regulations)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럴 경우 KCIL에서는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를 검토하고 지자체에 전문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주차장의 또는 화장실의 표식을 바꾸는 경우에도 어떤 그림, 어떤 색깔을 활용하여 개정할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KCIL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60% 이상이 장애인이며,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모금 및 후원을 통해 운영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직접지불제 및 개인예산제는 사회적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통제권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현재 KCIL에서는 개인예산제 뿐만 아니라 NHS 공공의료 서비스에서 나오는 건강 개인 예산제 지원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가 개인예산제 운영 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 당사자를 지원하는 단체를 계약을 통해 선정하고, 선정된 단체는 개별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예산제 확정서를 단체에게 송부하면 단체에서는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지원업무를 시작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개별

장애인에게 서비스 총량에 대한 금액이 할당되면 지원단체에서는 이용자가 얼마나 많은 시간의 서비스가 필요한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어떠한 서비스를 구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KCIL는 개인예산제를 할당받는 개별 장애인에게 전화 상담을 통해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받고 싶은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이 과정이 개인예산제 프로세스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기주도계획서 내 작성된 서류만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이용자의 욕구를 전화 상담 및 개별 미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지불제도 이용자는 개인이 직접 활동보조인을 고용할 수 있다. 이에 개인이 활동보조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 KCIL에서는 이에 대한 인력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CIL 홈페이지 내 구인 광고란을 통해 개별 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고, 또는 KCIL를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활동보조인을 소개 받을 수도 있으며, 이때 KCIL에서는 인력 고용과 관련된 행정 서비스 대행해주기도 한다.

3. 킹스톤 자립생활센터의 직접지불제 소개자료(연간보고서)

Direct Payments

Support as usual

Hello, I'm Amelia. The past year has been an interesting one for me with changes and adaptations to the way we work due to the Coronavirus pandemic. Visits usually take place in peoples' own homes where they are provided with support to understand the various aspects to Direct Payments such as payroll, employment insurance, and their responsibilities as employ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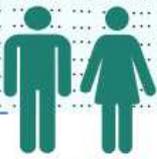


Amelia Berren
Senior Independent Living
Advisor

Choice and control

The pandemic has brought new challenges for our support services. However, we have worked together with people to make sure they continue to have choice and control in how they receive information, advice and support regarding their Direct Payments.

This support has been offered via home visits, office meetings or through technology such as Zoom or an outreach call. This flexibility of support enables people to stay in control of their own health and social care to live as independently as they choose.



53
REFERRALS
41 from RBK
11 from Kingston Carers Network

6

Recruitment

At his first job fair, Rhod gave a talk to a group of Kingston college students to highlight the benefits of working in social care as a Personal Assistant. Following this talk, three students expressed an interest in becoming a PA which bodes well for the future.



PA RECRUITMENT

35 requests
14 taken on



Job Centre

Rhod also reached out to Holly, the local Job Centre manager, in March and attended the Job Centre to explore recruitment opportunities. We now do an event (either a job fair or interview sessions) bi-weekly and have found some really good PA candidates.

WANT TO WORK AS A PA?

If you are interested in finding out about working as a Personal Assistant, or you know someone who might be, please get in touch with us. We will be happy to talk to you.

4. KCIL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Q.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의 경우,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는지?

- ▶ 기존에 돌봄 관련 교육 또는 응급치료교육 등을 수료하였는지 살펴본 후 대상자를 선발함.
- ▶ 선발된 활동보조인들을 대상으로 돌봄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KCIL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 현재 영국의 경우 늘어나는 돌봄 수요 대비 돌봄 서비스 지원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활동보조인 구인 시 단체의 적극적인 태도와 홍보가 필요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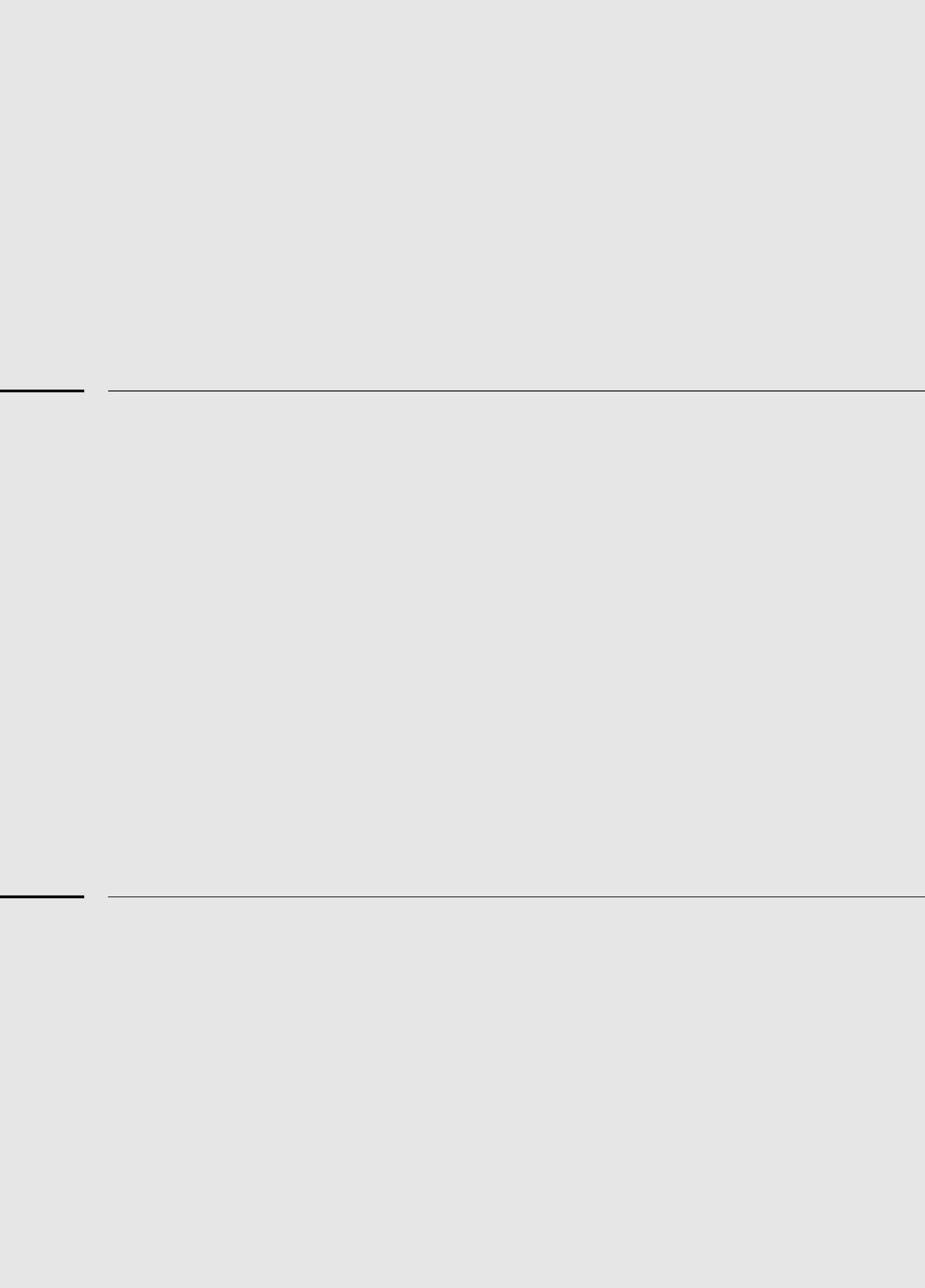
Q. 영국에서 활동보조인 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가?

- ▶ 영국에서는 장애인의 일상 활동을 돕는 PCA(Personal Care Assistant) 또는 활동지원인에게 직접 지불제라고 알려진 개인예산제를 통해 지급될 수 있음. 직접지불제를 통해 장애인들은 지역 의회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PCA 채용 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을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제공기관에 지불할 수 있음.
- ▶ 개인이 직접지불제를 통해 할당 받는 서비스 금액은 개별 요구에 대한 지자체 사회복지사의 평가 및 지방 의회의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일부 의회는 직접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한도를 책정해두고 있으며, 이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직접지불제 외에도 PCA를 포함한 돌봄 지원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장애인 개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PIP(개인 독립 지급) 및 출석 수당과 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함.
- ▶ 다이렉트 페이먼트나 기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된 PCA는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로 간주되며, 이는 그들이 자신의 세금과 국민 보험 기여금을 납부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함. 지원을 받는 개별 장애인은 PCA를 지불하고 고용법을 준수해야 함.
- ▶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시 장애인의 장애정도 및 욕구에 따라 활동보조

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차등 책정됨.(지원 업무의 난이도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단가에 영향을 미침)

Q. 개인예산제 이용 시 고용 관련 payroll 서비스를 제3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법은?

- ▶ 이용자가 직접 지불제를 제공받았을 때 내가 이런 거 나는 진짜 잘해. 수학적 재능이 타고 났어. 나는 세금계산 및 계약서 작성 등 행정 관련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고용 계약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 되지만 대부분의 장애인은 혼자서 고용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어려워함.
- ▶ 따라서 고용 관련 계약 대행 업무를 제3 기관에서 진행하고 이용자는 기관에 이용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음.
- ▶ 킹스톤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직접적인 payroll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은 아니고, 기관에서 관리하는 이용자가 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시 적합한 에이전시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실행전략

발표 5. 이승기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울시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모델구축 연구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실행전략

이승기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CONTENTS

서울연구원 및 한국장애인재단 연구 지원 중인 내용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수정 및 보완 예정으로 연구 완료 후 정식 보고서 발간까지는 인용 등이 불가함을 알립니다

- 01 개인예산제도 개요
- 02 개인예산제도 추진 배경
- 03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추진 방향
- 04 서울시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실행계획(안)



1. 개인예산제도 개요

개인예산제도 개념

○ 사회서비스 급여의 이용에서 **이용자의 선택과 통제를 극대화하는 개별적 예산운용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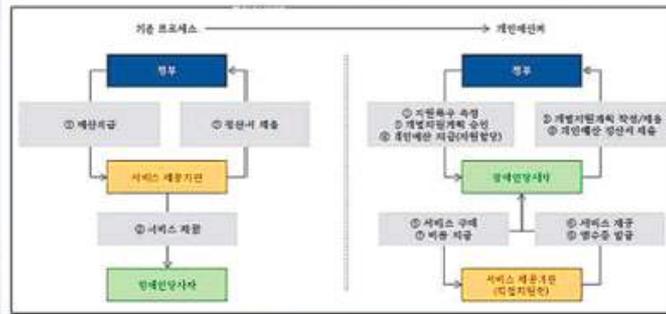
- (이용자) 선택과 통제권을 갖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
급여의 사용처 및 사용량을 자기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 및 집행
- (공 공) 자원 할당의 주체
- (지원기관) 옹호와 중개 서비스 제공

→ 예산 계획의 수립 및 서비스 선택과 통제를 통한 서비스 이용의 유연성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임

2

개인예산제도 개념

○ 예산집행 및 서비스 이용 프로세스 흐름도



개인예산제도 추진 배경

02

개인예산제도 추진 배경

○ 관련 근거

-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전달체계 전환(서울비전 2030 안심안전도시분과 추진사업)

○ 관련 동향

-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No.47:장애인 맞춤형 통합자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개인예산제 도입)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당사자의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체계인 개인예산제 도입

5

제도 도입의 필요성

- 현재 장애인복지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은 **일방통행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삶의 주체성을 제한함**
- 이에 서비스 이용시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강조한 **새로운 전달체계 개편 필요**
- 선진국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자원제도 한계를 극복하고자 **개인예산제도를 적극 실시하고 있음**
 - 영국, 독일, 호주,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제도 한계 극복,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이용자 배제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대안으로 개인예산제도 실시 중임
- 국내외에서 제시 또는 시행되고 있는 개인예산제도 정책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서울시 정책·제도·기술력 기반 마련 필요
 - **현 복지제도의 미흡사항 보완하고 자활활동의 공공성을 높이면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전달체계로의 개편, 즉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시행 필요**

6



【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추진전략 】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검토 방향

1. 장애인이 우리나라 및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모든 일상적인 영역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2. 현행 시스템에 의해서는 서비스 제공이 기관 중심으로 편재되고 영역이 국한되어, 장애인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한계가 많음
3. 현행 시스템의 개편으로 장애인에게 개인의 필요에 따른 일상적 삶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장애인에게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 선택권을 부여하여 개인의 필요를 유연하게 충족시키도록 함
4.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는 비장애인의 일상적 삶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영역에 준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가능한 한 확대하도록 함
5.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비영리기관의 서비스 이외에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기관(예를 들어, 여행사, 학원, 마트, 식당, 미용실 등)이 서비스 제공자로 편입될 필요가 있음
6. 개인예산제도의 운영은, 복잡한 행정 절차 중심을 지양하고 장애인에게 폭 넓은 재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제한을 토대로 운영 과정을 수립함

2022년 국외연수 결과보고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실행전략



2022년 국외연수 결과보고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실행전략

1.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추진 방향

2) 기관 직접서비스 VS 개인예산제

	제공방식	주요 제도	사정방식	이용방식
서비스보장	기관 직접 서비스	복지관등시설?원서비스	기관에서 서비스에 맞추어 모집	기관 방문 해당서비스 이용
	바우처 서비스	활동지원제도 등 바우처	별도 인정조사표	바우처 사용방식에 따라 사용
	현금	개인예산제	자기주도계획에 따른 서비스 개인예산 인정	인정된서비스 개인예산에따라사용

1. 기관 직접서비스와 개인예산제도는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므로 계속해서 공존함
2. 기관 직접서비스와 개인예산제도의 검토 지점은 기관에 제공하는 보조금을 일부 축소하여 개인예산제도의 재원에 활용하는 것임
개인예산제도가 충분히 안정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함

11

1.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추진 방향

3) 활동지원제도 VS 개인예산제

	제공방식	주요 제도	사정방식	이용방식
서비스보장	기관 직접 서비스	복지관등시설?원서비스	기관에서 서비스에 맞추어 모집	기관 방문 해당서비스 이용
	바우처 서비스	활동지원제도 등 바우처	별도 인정조사표	바우처 사용방식에 따라 사용
	현금	개인예산제	자기주도계획에 따른 서비스 개인예산 인정	인정된서비스 개인예산에따라사용

1. 활동지원제도와 장애인개인예산제는 일정기간 병행
2. 위 두 제도가 병행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가능
 - 첫째, 개인예산제도를 선택하지 않고 현행의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현재처럼 활동지원제도 이용
 - 둘째, 활동지원제도를 개인예산제도에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시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행의 활동지원바우처 금액을 현금으로 받아 자신의 이용 계획에 따라 사용
다만, 이경우 현금을 자신이 원하는 곳에 무제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용 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따라서 현금 이용 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함
3. 위 두 제도가 통합되는 방식은 추후 검토가 필요하지만 아래와 같은 방식이 가능할 것임
 - 활동지원제도의 별도인정조사표에 의한 사정 방식 대신 개인예산제도의 자기주도계획에 따른 서비스 개인 예산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재편되는 것이 가능한
- 이렇게 되면 서비스에 대한 보장 방식 중 바우처 방식이 개인예산제도로 상당부분 흡수될 수 있음

12



4. 서울시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실행계획(안)

서울시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개요

1. 사업대상 :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자제 및 뇌병변 장애인 + 활동지원제도 미용자 50%, 비미용자 50%

2. 선정방식 : 연령별 비례총화 무작위 추출

3. 사업지역 : 서울시 전역(25개구)

4. 사업재원 : 활동지원제도 등 기존 제도 예산 + 추가지원 예산
* 향후 시행시 여사 보건복지부등 협의 필요

5. 전달체계 : 4개 권역 자치구(승인기관), 집행기관(민간전달체계)

6. 사업 프로세스

```

    graph LR
      A[1 자기주도계획 준비 및 신청] --> B[2 자기주도계획 협의 및 검토]
      B --> C[3 개인예산 확정]
      C --> D[4 현금 지급]
      D --> E[5 자기주도계획 변경 및 종료]
      E --> F[6 정산]
      F --> G[7 개인예산 집행]
      
```

- * 기본 방향 : **장애인 개인의 삶의 목표**에 따라 자유롭게 자기주도의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확정된 예산계획에 따라 집행
- * 장애인의 재량을 유연하게 허용하고 행정적 제한을 최소화하여 진정한 선택권 보장
- * 집행 과정에서 **개인예산 제공기관(중계기관)**이 장애인의 자기주도계획 수립, 집행 및 정산 지원

14

2022년 국외연수 결과보고 서울시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실행전략

4. 서울시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2022년)

서울시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개요

주체별 역할 및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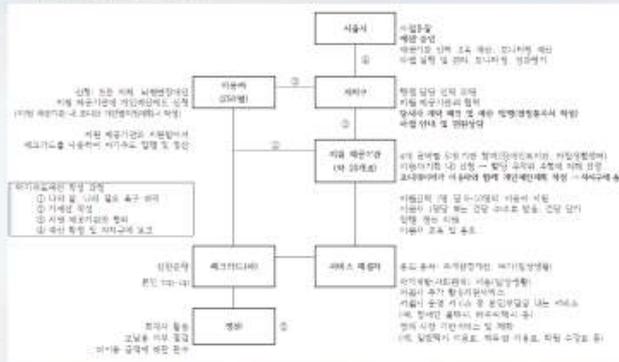


15

4. 서울시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2022년)

서울시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개요

주체별 역할 및 프로세스



16

2022년 국외연수 결과보고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실행전략

4. 서울시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실행계획(안)

세부 실행계획 : 1. 자기주도예산서 작성 및 신청

• 자기주도예산서의 의미

- 자기가 받을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choice)하고 통제(control) → 개인이 받을 서비스는 당사자 중심으로 전환되어, 당사자의 선택과 통제에 따라 전달되어야 한다는 의미
- 참여자 본인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주도한 선택과 주도하지 않은 선택 모두를 포함
- 고용인물 고용·해고·관리할 수 있는 형태(고용 권한) +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구매 예산 권한(예산 권한)

• 자기주도예산서의 작성 및 신청 절차

1) 작성

- 참여자 주도의 자기주도적 사정(self-directed assessment) 방법 사용하여 당사자 필요 지원 욕구 측정 → 지방정부 담당자 승인
- 참여자 스스로 작성성 원칙이나 필요시 제공기관(장애인복지관 / 자립생활센터 지정) 내 지원 코디네이터 지원 가능

2) 신청

- 참여자가 자기주도예산서 및 개인별지원계획서 작성 후 서울시에 신청
- 일부 인적 제한을 가지고 있는 뇌병변 장애인 신청자격 제외
- 필요시 지정된 지원 제공기관의 지원 코디네이터가 지원 가능

17

4. 서울시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실행계획(안)

세부 실행계획 : 1. 자기주도예산서 작성 및 신청

• 주체별 역할



〈서울시〉

- 자기주도예산 사업 총괄
- 예산 확보
- 전체적인 사업 실행 및 관리
- 모니터링
- 성과 및 재정의 효율성 평가



〈자치구〉

- 이용자 신청접수를 위해 지원제공기관 선정 및 의뢰
- 승부된 개인별지원계획서 토대로 할당 금액 검토 및 승인
- 1개월 이내 결과 통보
- 참여자 존중, 개별 욕구 인정 능력 필요



〈지원 제공기관〉

- 자치구로부터 자기주도예산서 수립 가능 지정 단계 및 시설
- 이용자와 개인별 지원계획서 작성 후 자치구로 송부
- 1년 동안 8~10명 이용자 지원, 건당 수수료로 책정 후 산정
- 개인예산제도 전 과정에서 이용자 지원

18

2022년 국외연수 결과보고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실행전략

4. 서울시장(예산/예산제도) 관련사업(연수사업)

세부 실행계획 : 1. 자기주도예산서 작성 및 신청

• 관련 서식 작성 방법

구분	주요 내용
기본정보	- 인적사항 - 가족관계 - 나를 지원하는 사람
나에 대한 설명	- 나의 상황 - 내가 바라는 변화 - 변화를 위한 지원
내가 원하는 삶의 계획	- 나의 주요 욕구 및 관심 - 일상생활과 지원 - 사회생활 지원 - 경제활동 - 건강과 안전 - 교육지원 - 주거환경지원 - 기타
서비스 및 지원	- 개인별 서비스 및 예산 계획 - 개인별 서비스 신청 및 계획

- 1) 개인별 지원계획 상세 개발**
 - 개인이 원하는 삶의 계획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예산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에 의한 서식」 최대한 활용
- 2) 개인별 지원계획 항목 세부내용**
 - 기본정보 : 참여자의 세부정보로 신청자, 조력인, 지원 코디네이터 작성 가능
 - 참여자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과 현재 지역사회 내 지원 자원
- 3) 나에 대한 설명**
 - : (나의 상황)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파악
 - (내가 바라는 변화) "좋은 삶(good life)"을 위해 현재의 상황 및 삶에서의 변화 욕구 파악
 - (변화를 위한 지원) 변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 (나의 주요 욕구 및 관심) 참여자가 원하는 영역별로 현재상황 및 필요 이유, 희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지원/서비스/지원/소요예산 구체적으로 작성
- 4) 서비스 및 지원**
 - 희망하는 서비스의 비용 요약
 - : 각 서비스 명칭, 서비스 기간, 서비스의 단가, 각 서비스의 단위당 총비용, 총예산 비용 정보 포함

19

4. 서울시장(예산/예산제도) 관련사업(연수사업)

세부 실행계획 : 1. 자기주도예산서 작성 및 신청

• 나의 주요 욕구 및 관심(지원 영역)

지원영역	지원 항목(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물품서비스(생활지원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및 이동서비스(이동지원 서비스, 교통수단 지원비용 등))
사회생활 지원	문화·여가활동 지원 여취(관광) 지원 환경·종교를 위한 활동 및 재취기립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활동
경제활동 지원	구직 활동 창업 활동
건강 및 안전 지원	건강증진 및 체육 활동
교육 지원(자기개발)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 학술지원지원
주거환경 개선	주거개조비용

-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모델 제시를 위해 독자적 기준 마련
 - : 타제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모품 비제
- 참여자가 각 영역별 자신의 현재 상황 및 필요한 이유, 지원/서비스/지원 구체적으로 작성
 - : 자원에 관계없이 영역에 따라 중복지원 가능
- 소요 예산 책정
 - : 일부 단가 차이 큰 항목은 사전에 견적서 참여 제출
 - : 참여자 및 지원 코디네이터가 참고할 수 있는 서비스 항목별 단가를 목록에 첨부 예정
- 지원 코디네이터의 필요도에 대한 의견 기술
 - : 참여자의 개인별 예산 계획 심의 과정 시 충분히 협의 가능하도록 작성
- 서비스 변경
 - : 지원 영역 변경 → 사전 승인절차 후 집행(승인기간)
 - 지원 세부 항목 변경 → 50%내 변경가능(집행기관 담당자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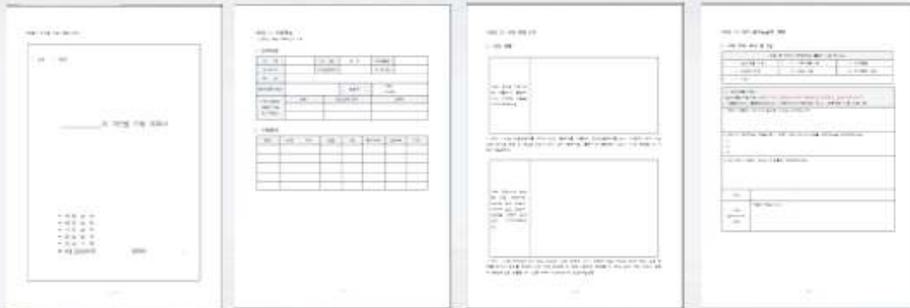
20

2022년 국외연수 결과보고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실행전략

4. 서울시장개인예산제도 시행(당초안)에 대한 내용

세부 실행계획 : 1. 자기주도예산서 작성 및 신청

• 개인별 자원 계획서 서식(안)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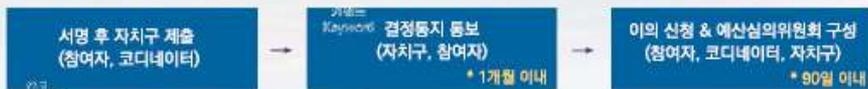


21

4. 서울시장개인예산제도 시행(당초안)에 대한 내용

세부 실행계획 : 2. 자기주도예산서 협의 및 검토

• 자기주도예산서의 협의 및 검토 절차



• 참여자의 역할

-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요구를 기본으로 서비스 협의 과정에서 동지권 행사
 - 이의 신청 시 검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 본인이 기대했던 결정의 수준
 - 2) 검토를 원하는 결정의 내용
 - 3) 자치구가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 4) 검토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증거(의사 소견서, 기타 환경의 변화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2

2022년 국외연수 결과보고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실행전략

4. 서울시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실행계획(안)

세부 실행계획 : 2. 자기주도예산서 협의 및 검토

주체별 역할

 〈서울시〉	 〈자치구〉	 〈자원 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주도예산서 검토 및 승인 - 최종 급여량 및 본인부담금 확정 - 참여자에게 최종예산 통보 - 계약체결 및 예산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자원계획 승인(1개월 이내) - 자기주도예산서 협의 및 검토서 서면 통보 진행 - (미동의 시) 1단계: 계획 승인 재검토 및 승인 2단계: 예산심의(조정)위원회 검토 및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로부터의 승인 내용 확인 - (미동의 시) 즉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 (동의 시) 예산 사용에 관한 명확한 설명 - 급여지급 이후 참여자에게 안내, 재정 관리 지원 (지출내역 관리 및 구매, 정산 지원)

23

4. 서울시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실행계획(안)

세부 실행계획 : 2. 자기주도예산서 협의 및 검토

지원의 필요도 측정

지원의 필요성		1 -- 지원의 필요도 -- 4			
	Keyword				
지원의 시급성	지원의 목표 및 수단은 시급성이 요구된다 -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한 지원 - 지원 부재 시 삶의 질 악화	1	2	3	4
지원의 적절성	지원의 목표와 수단은 적절하다 - 참여자의 신체 구조 및 기능의 손상과 연관 - 참여자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고 합당한 수단	1	2	3	4
지원의 효율성	지원에 투입되는 비용이 효율적이다 - 지원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지원 수단의 비용은 합당한 가치가 있음 - 지원 목표를 이루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다른 방법은 없음	1	2	3	4

-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1) 지원의 시급성이 <4>인 경우
- 2) 지원의 적절성이 <4>인 경우
- 3) 지원의 시급성이 <3>이면서 지원의 적절성이 <3>인 경우
- 4) 지원의 시급성이 <2>이면서 지원의 적절성이 <3>이면서 효율성이 <3> 이상인 경우
- 5) 지원의 시급성이 <2>이면서 지원의 적절성이 <2>이면서 지원의 효율성이 <4>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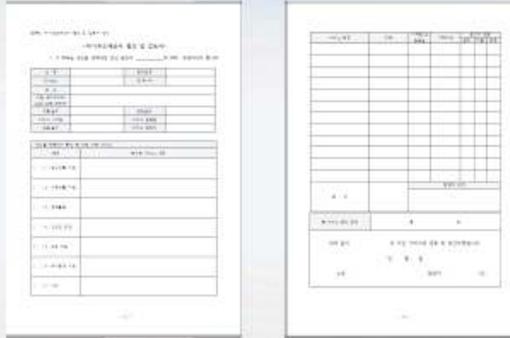
24

2022년 국외연수 결과보고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실행전략

1.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내면사업 관련계획안

세부 실행계획 : 2. 자기주도예산서 협의 및 검토

• 자기주도예산서 협의 및 검토서 서식(안) 예시



25

1.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내면사업 관련계획안

세부 실행계획 : 3. 서비스 내용 및 한금액 확정

• 시범사업 수행 관련 서비스 내용 및 범위 검토 시 고려사항

-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개인예산제도 사업과의 관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사업 중 일부를 포함함
- 이와 더불어 모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적용(포함)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서비스, 서울시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서비스가 포함됨
- 이에 따라 시범사업 적용 서비스에는, 보건복지부 제공 활동지원서비스, 서울시 추가 제공 활동지원서비스, 서울시 운영 서비스 중 본인부담금을 내는 서비스(예, 장애인콜택시, 바우처택시 등), 사회복지사로 제도화되지 않은 시장 기반 서비스(예, 택시 이용료, 체육관 이용료, 학원 수강료 등)가 포함될 수 있음
- 하지만 모든 서비스 영역에서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 예산 부족을 체감할 수 있기에 서비스 영역을 제한할 수 있음
- 필요한 서비스 세부 영역에 대해서는 이어서 진행되는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모델 구축 연구에 따른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참조 요망

26

2022년 국외연수 결과보고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실행전략

4.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사업 실행계획

세부 실행계획 : 3. 서비스 내용 및 현금액 확정

· 비용 산정 및 인정 방법(효주 사례)

시장가	키워드 Keyword 견적가	상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서비스 및 재화의 시장 가격을 그대로 인정 - 고도로 경쟁적인 시장에 적용 - 예시 : 교통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서비스 및 재화에 대한 몇 개(최소 3개) 견적을 제출 - 가격의 적정성 검증 또는 최저 견적을 예산 비용을 산정 및 인정 - 시장 기제가 작동하기 어려운 고도로 특화된 영역에 적용 - 예시 : 주택 개조, 보조공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서비스 및 재화별로 상한가를 설정, 상한가 이하에서 실제 시장 가격 인정 - 현재 시장 중인 대부분 시장에 적용 (예: 돌봄) - 매년 상한제를 실시하는 영역에 대해 가격 키타로그 제작, 매해 시장 동향 반영하여 회계연도에 맞추어 최신화

27

4.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사업 실행계획

세부 실행계획 : 3. 서비스 내용 및 현금액 확정

- 서비스의 현금액을 환산할 경우 서비스 유형에 따라 금액을 정할 수 있음
 - 바우처의 경우 바우처 금액을 그대로 반영
 -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그대로 반영
 - 시장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시장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되, 가격 격차가 있기에 상한가 설정 필요 또는 연간 상한가 설정 가능
 - ※ 이때 자기주도 예산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적용된 가격과 자기주도 예산제를 적용한 이용자에게 적용된 가격이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됨
 - 공급자재정지원방식으로 운영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환산 기제를 통해 금액 확정 필요 (예, 장애인복지관의 한 프로그램 이용료는 월 10만 원 등 _ 추후 과제)
- 시범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활동지원서비스, 서울시 추가 제공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부담 서비스, 시장 기반 서비스에 한정되기 때문에 실제 금액을 반영하면 됨
 - 다만, 시장 기반 서비스의 경우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품질, 수요공급의 양 등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고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28

2022년 국외연수 결과보고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실행전략

4.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실행계획

세부 실행계획 : 3. 서비스 내용 및 현금액 확정

•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

구분	소득	본인부담금 비율
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20%
	중위소득 100% 이상 150% 미만	10%
	중위소득 50% 이상 100% 미만	5%
	중위소득 50% 미만	0%

- 위 본인부담금 산정기준은 예시이며, 활동지원제도 본인부담금 비율 등 활용 가능
- 자기주도계획서 작성 시 소득 확인과 관련한 개인정보동의 받도록 함

29

4. 서울시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실행계획(안)

세부 실행계획 : 4. 현금 지급 및 사용

• 현금 지급 및 사용 방식

체크카드	현금 지불	계좌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예산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현금사용 방법 - 독립된 개인예산지원 계좌의 체크카드 발급받아 사용 (이외의 다른 수입 및 지출과 혼합사용 불가) - 영수증 반드시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득이 한 경우 이용 가능 - 반드시 사전 승인 필요 - 금액이 적정한가에 대한 참여자의 사전확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승인 후 이체 - 상대방의 은행 및 금액 확인 - 이체 확인증 및 은행 캡처 사진 첨부

30

2022년 국외연수 결과보고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실행전략

4. 서울시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세입사업 실행계획(안)

세부 실행계획 : 4. 현금 지급 및 사용

주체별 역할

주체	역할
 〈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사용의 주체이자 1차 책임자 - 전용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지출증빙 서류 작성 및 제출 - 증빙서류 보관 - 지원 제공기관에 정산 지원 요청 가능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전용계좌에 개별예산 입금 - 현금사용 절차 및 유의사항 교육 - 지원기관 대상 지원 역할 교육 - 금융기관과 예산액 처리 및 관리 등 협의
 〈자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관 및 코디네이터 모니터링 - 개인별 전용계좌 개설 확인 및 지원 - 상시 지도 및 관리·감독

31

4. 서울시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세입사업 실행계획(안)

세부 실행계획 : 4. 현금 지급 및 사용

주체별 역할

주체	역할
 〈지원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사용 전 과정 조력 - 전용계좌개설 지원 및 관리 - 참여자 모니터링 (소통, 증빙자료 상시 확인) - 상담내용 및 성과 기록 - 부정사용 예방 및 적극 대처 - 담당자는 반드시 재정보증 보험 가입
 〈인적·물적 서비스 제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소개 시 정확하고 올바른 서비스 정보 제시 - 상품 가치에 맞는 정당한 대가 요청 - 관련 기록 보존
 〈금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계좌 개설 지원 - 체크카드 발급 - 서울시와 M.O.U 체결 드을 통해 금융서비스 지원 협조

32

2022년 국외연수 결과보고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실행전략

4. 집행인 개인예산제도 - 연차입금형태

세부 실행계획 : 4. 현금 지급 및 사용

• 관련 제출서류(안) 예시

중재인개인예산 지출내역서

1.2022.03.02

구분	내역	금액	잔액
1.1	1.1.1	100,000	100,000
1.1	1.1.2	50,000	50,000
1.1	1.1.3	50,000	0
1.2	1.2.1	100,000	100,000
1.2	1.2.2	50,000	50,000
1.2	1.2.3	50,000	0

중재인개인예산 현금출납부

1.2022.03.02

구분	내역	금액	잔액
1.1	1.1.1	100,000	100,000
1.1	1.1.2	50,000	50,000
1.1	1.1.3	50,000	0
1.2	1.2.1	100,000	100,000
1.2	1.2.2	50,000	50,000
1.2	1.2.3	50,000	0

33

4. 서울시 집행인 개인예산제도 시행(경상지역예안)

세부 실행계획 : 5. 정산

• 정산 행위

- 계약 시 제출한 소요예산에 일하는 집행금액을 설정한 시스템(정산내역, 카드이용내역, 계좌이체내역, 증빙서류)에 입력 및 최종 제출하는 단계
-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정산 절차 : 온라인 정산 or 오프라인 정산 방식 이용



34



2022년 장애인 정책 분야 국외연수사업

2023.02.

<https://www.herbnanum.org/>

CONTACT US

02-6399-6235

research@herbnanum.org

